#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9호 2023. 7. 31.(월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73호 대한민국알프스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574호 하동군위원회 정비를 위한 하동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4
○ 하동군 조례 제2575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10
○ 하동군 조례 제257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13
○ 하동군 조례 제2577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23
○ 하동군 조례 제2578호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25
○ 하동군 조례 제2579호 하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28
○ 하동군 조례 제2580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39
○ 하동군 조례 제2581호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46
○ 하동군 조례 제2582호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51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61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53
○ 하동군 규칙 제1262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60
○ 하동군 규칙 제1263호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123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3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 • • • • • • • • • • • • • 126
○ 하동군 고시 제2023-13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 • • • • • • • • • • • • • 127
○ 하동군 고시 제2023-140호 2023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 • • • • • • • • • • • 128
○ 하동군 고시 제2023-14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 • • • • • • • • • • • • 134
○ 하동군 고시 제2023-142호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중대한변경) 고시 136
○ 하동군 고시 제2023-14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 • • • • • • • • • • • • • 142
○ 하동군 고시 제2023-145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 • • 143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023호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4
○ 하동군 공고 제2023-1024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0
○ 하동군 공고 제2023-1026호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67
○ 하동군 공고 제2023-1037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2
○ 하동군 공고 제2023-1038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0
○ 하동군 공고 제2023-1041호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191
○ 하동군 공고 제2023-105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행정예고 • • • • • • • 204


##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013호 보상계획 공고(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 • • • • 207
○ 하동군 공고 제2023-1071호 보상계획 공고(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 • • • • 224

| 회<br>람 |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73 호

#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위원회정비를 위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74 호

## 하동군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2조(「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조(「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br><신 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삭 제> |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삭 제> |
|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9조(실무위원회) ① ---------- ---------- ----- 둘 수 있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③(생 략)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삭 제> |
|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삭 제>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 ⑤ (생 략)<br>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br>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br>1. (생 략)<br>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br>3. (생 략)<br>② (생 략) | 제6조(회의) ① ----------.<br>1. (현행과 같음)<br><삭 제><br>3.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br>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삭 제>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75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0명”을 “7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14명”을 “71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6명”을 “1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기관별 /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 사업소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 | |
| 총 계 | 732 | - | |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 | |
| 군수 | 1 | 1 | | | | | | |
| 일반직 계 | 701 | - | | | | | | |
| 4급 | 5 | 4 | | 1 | | | | |
| 5급 | 41 | 19 | 3 | 2 | 4 | | 1 | 12 |
| 6급 이하 계 | 655 | - | | | | | | |
| 별정직 계 | 3 | - | | | | | | |
| 5급 상당 | | | | | | | | |
| 6급 상당 | 1 | 1 | | | | | | |
| 7급 상당 | 1 | 1 | | | | | | |
| 8급 상당 | 1 | 1 | | | | | | |
| 연구직 계 | 2 | - | | | | | | |
| 연구사 | 2 | - | | | | | | |
| 지도직 계 | 25 | - | | | | | | |
| 지도사 | 25 | - |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br>----------<br>----------<br>---- 732명----------<br>----------. |
| 1. 집행기관의 정원 : 714명 | 1. ---------- 713명 |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 2. ---------- 19명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76 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을 “전략기획”으로, “규제개혁, 엑스포지원”을 “법무지원, 교류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혁신TF”를 “교육혁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을 “복지기획, 기초생활보장”으로, “통합조사관리, 대외협력”을 “통합조사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복지기획,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여성정책”을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 노인시설”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시설”을 “문화관광시설, 공단설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선진교통 등 건설교통”을 “하천 등 건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하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총괄”을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선진교통 등 안전교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투자유치,”를 “투자정책, 투자유치,”로, “두우개발, 법률지원”을 “두우개발”로 한다.

2. 미래도시, 도시건축, 도시재생, 지역활력, 지역개발 등 도시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안전 등 건축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호 중 “농기계지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농업혁신TF”를 “농촌자원, 농업인력, 축산경영, 축산위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지역활력추진단을 둔다.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 미래전략담당관-----. |
|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생략)<br>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1. 정책기획, 예산, 홍보, 청렴감사, 규제개혁, 엑스포지원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br>2. 행정, 혁신지원, 정보통신, 평생학습, 교육혁신TF 등 행정에 관한 사항<br>3.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대외협력 등 주민행복에 관한 사항<br>4. 복지기획,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br>5.·6. (생 략) | 제5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br>② ----------.<br>1. 전략기획---------- 법무지원, 교류협력 ----------<br>2. ---------- --- 교육혁신 ----------<br>3. 복지기획,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 ----------<br>4.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 노인시설 ----------<br>5.·6. (현행과 같음) |
|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략)<br>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br>1. ~ 4. (생 략) |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br>② ----------.<br>1. ~ 4. (현행과 같음) |

| | |
|---|---|
| 5.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시설체육에 관한 사항 | 5. ---------- 문화관광시설, 공단설립 ---------- |
|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경제기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 제7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
|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민원, 건축행정, 복합민원, 미래도시TF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 2. 미래도시, 도시건축, 도시재생, 지역활력, 지역개발 등 도시에 관한 사항 |
| <신 설> | 3.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안전 등 건축에 관한 사항 |
| 3.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선진교통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 4. ---------- 하천 등 건설---------- |
| 4. 안전기획, 자연재난, 하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 5. ----------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선진교통 등 안전교통----- |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 6. 투자유치, 산단개발, 두우개발, 법률지원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7. 투자정책, 투자유치, -------- 두우개발 ----- |
|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3조(소관사무) ----------. |
| 1. 농업정책, 농기계지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농업혁신TF 등 농 | 1. ------- 농촌자원, 농업인력, 축산경영, 축산위생 --------- |

| | |
|---|---|
| 축산에 관한 사항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농업인재양성, 농촌활력, 농촌개발, 농업인력지원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 <삭 제> |
| 4. (생 략) | 3. (현행 제4호와 같음)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77 호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2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br>1. ~ 2. (생 략)<br>② ~ ⑤ (생 략) | 제11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2023년----------<br>----------<br>-------2023년 7월----------<br>----------<br>----------<br>----------<br>----------.<br>1. ~ 2. (현행과 같음)<br>② ~ ⑤ (현행과 같음)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78 호

# 하동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79 호

# 하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수립 등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

검하여야 한다.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5조 기본계획 및 제6조 적응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80 호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4.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 5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 1. 체육시설

###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시 설 별 | | 사용구분 | 기본시간 | 요금 | | 비고 |
|---|---|---|---|---|---|---|
| | | | | 평일 | 토·공휴일 | |
| 공설운동장 (육상경기) | | 체육경기 | 3시간 | 11,000 | 15,000 | |
| | | 체육이외 | 3시간 | 18,000 | 22,000 | |
|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축구장) | | 체육경기 | 3시간 | 100,000 | 150,000 | |
| | | 체육이외 | 3시간 | 150,000 | 200,000 | |
| 실내체육관 (면적 2,000㎡이하) | | 체육경기 | 1시간 | 5,000 | 6,000 | |
| | | 체육이외 | 1시간 | 7,000 | 9,000 | |
| 실내체육관 (면적 2,000㎡이상) | | 체육경기 | 1시간 | 7,000 | 8,000 | |
| | | 체육이외 | 1시간 | 9,000 | 11,000 | |
| 스포츠 파크 | 인조잔디 축구장 | 체육경기 | 1시간 | 20,000 | 25,000 | |
| | | 체육이외 | 1시간 | 25,000 | 30,000 | |
| | 실내 테니스장 | 체육경기 | 1면/1시간 | 7,000 | 8,000 | |
| | 테니스장 | 체육경기 | 1면/1시간 | 5,000 | 6,000 | |
| | 족구장 | 체육경기 | 1면/1시간 | 5,000 | 6,000 | |
| | 풋살장 | 체육경기 | 1구장/1시간 | 7,000 | 8,000 | |
| 읍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 체육경기 | 1시간 | 15,000 | 20,000 | |
| | | 체육이외 | 1시간 | 20,000 | 25,000 | |
| 인조잔디야구장 | | 체육경기 | 1시간 | 25,000 | 35,000 | |
| 실내야구연습장 | | 체육경기 | 1시간 | 5,000 | 6,000 | |

## 나. 연습이용료

(단위 : 원)

| 시설별 | 이용기준 | 회원 | 비회원 | | 비고 |
|---|---|---|---|---|---|
| | | 연 이용료 | 월 이용료 | 1회 이용료 | |
| 파프골프장 | 4시간 | 60,000 | - | 4,000 | 1회 이용시 하동군민은 50% 감면할 수 있다 |
| 테니스장·족구장 | 2시간 | 100,000 | 20,000 | 2,000 | 1회 이용시 야간/공휴일은 이용료에 50% 가산한다 |

1. “1회 이용자” 란 1일 입장권을 예매 또는 발권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2. “회원” 란 하동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소속 클럽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회원 연이용료는 소속 클럽 대표자 명의로 일괄 납부하며, 분납도 가능하다.
3. “비회원” 란 하동군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소속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이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6. 연도 중에 연 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가입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이용료를 수납한다.
7. 이용료는 본 조례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부속시설

(단위 : 원)

| 종 별 | | | 기준 | 요금 | 비 고 |
|---|---|---|---|---|---|
| 조명시설 | 실내·외 체육시설 | 10㎾미만 | 시간당 | 6,000 | |
| | | 10~20㎾ | 시간당 | 8,000 | |
| | | 20~30㎾ | 시간당 | 10,000 | |
| | | 30㎾이상 | 시간당 | 12,000 | |
| | 공설운동장 | | 3시간 | 50,000 | |
| 냉·난방기 | 실내체육시설 (면적 2,000㎡미만) | | 시간당 | 15,000 | |
| | 실내체육시설 (면적 2,000㎡이상) | | 시간당 | 20,000 | |
| 앰프시설 | 실내·외 체육시설 | | 1회 | 10,000 | |
| 전기시설 | 실내·외 체육시설 | | 1회 | 5,000 | 별도시설 사용시 |
| 전광판 | 실내·외 체육시설 | | 시간당 | 10,000 | |
| 기타 필요한 사용료 실제사용료 | | | | | |

## 3. 광고물의 게시·게양

(단위 : 원)

| 종 류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 게시면적 | - |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한다. |
| | 1제곱미터당 (월액) | - |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br>◦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 | 1등급 | 5,000 | ◦1등급 : 본부석 정면 주위로 한다. |
| | 2등급 | 4,000 | ◦2등급 :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위치로 한다. |
|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 행위 | 1일 1개 | 2,000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9. ---------- 6세 이상 12세 이하 ----------. |
| 10. “학생”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10. ---------- 13세 이상 18세 이하 ----------. |
| 11. “일반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 11. ---------- 19세 ---------- 65세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5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③ ----------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 1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16. ---------- 18세 ---------- - |
| 17.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삭 제> |
| 18.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81 호

# 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제24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5.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나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청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 등을 다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과 결정) ①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준용) 재정지원 절차, 방법, 교부조건, 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명(한글)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
| | 사업체명 |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사업명칭 | | | | | | |
| 면허종류 | | 면허일자 | | 면허번호 | | |
| 사업목적 및 내용 | | | | | | |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 | | | | | |
| 사업비 | 총사업비 | 원 |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 원 | | |
| 자기자본액 | 원 | 자기자본 부담액 | 원 | | | |
| 사업기간 | | | | | | |

「하동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 | | | | | |
|---|---|---|---|---|---|---|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 |
|---|---|
| 첨부 서류 등 | 1. 사업계획서<br>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br>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br>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82 호

##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중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를 각각 “5배”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5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 ③ ------5배----------.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61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구분 | 직급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 | 직속기관 | | 의회 사무과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 기술센터 | | | |
| 총 계 | | 732 | 369 | 81 | 66 | 19 | 23 | 174 |
| 정무 | 정무직 계 | 1 | 1 | | | | | |
| | 정무직 | 1 | 1 | | | | | |
| 일반 | 일반직 계 | 701 | 363 | 81 | 41 | 19 | 23 | 174 |
| | **4급 소계** | 5 | 4 | 1 |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 5 | 4 | 1 | | | | |
| | **5급 소계** | 41 | 19 | 2 | 4 | 3 | 1 | 12 |
| | 행정 | 4 | 3 | | | 1 | | |
|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 2 | | 2 | | | | |
| | 시설 | 1 | 1 | | | | | |
| | 행정·사회복지 | 1 | 1 | | | | | |
| | 행정·시설·환경·공업 | 6 | 6 | | | | | |
| | 행정·농업·시설 | 3 | 1 | | | | | 2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2 | | | | | | 2 |
| | 행정·해양수산 | 1 | 1 | | | | | |
| |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 4 | 2 | | | | | 2 |
| | 행정·시설·사회복지 | 5 | 1 | | | | 1 | 3 |
| | 행정·농업·수의·지도관 | 1 | | | 1 | | | |
| | 행정·공업·농업·시설 | 5 | 2 | | | 2 | | 1 |
| |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 2 | | | | | | 2 |
| | 행정·환경 | 1 | 1 | | | | | |
| | 행정·농업·지도관 | 2 | | | 2 | | | |
| | 농업·지도관 | 1 | | | 1 | | | |

| 구분 | 직급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보좌기관포함) | 직속기관 | | 의회사무과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 | |
| 일반 | 6급 소계 | 186 | 100 | 19 | 8 | 4 | 5 | 50 |
| | 행정 | 8 | 8 | | | | | |
| | 세무 | 1 | 1 | | | | | |
| | 속기 | 1 | | | | 1 | | |
| | 녹지 | 1 | 1 | | | | | |
| | 해양수산 | 1 | 1 | | | | | |
| | 보건진료 | 5 | | 5 | | | | |
| | 환경 | 2 | 2 | | | | | |
| | 시설 | 6 | 6 | | | | | |
| | 운전 | 4 | | | 1 | | | 3 |
| | 행정·세무 | 14 | 8 | 1 | | | 1 | 4 |
| | 행정·사회복지·전산 | 10 | 6 | | | | 1 | 3 |
| | 행정·공업 | 2 | | | 1 | | | 1 |
| | 행정·농업·시설 | 16 | 6 | | 1 | | 1 | 8 |
| | 행정·녹지 | 2 | | | | | | 2 |
| | 행정·환경 | 1 | 1 | | | | | |
| | 행정·시설 | 20 | 18 | | | | | 2 |
| | 전산·방송통신 | 1 | 1 | | | | | |
| | 농업·녹지 | 2 | 1 | | 1 | | | |
| | 농업·수의 | 1 | | | 1 | | |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6 | | | | | | 6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4 | 1 | | | | | 3 |
| | 행정·세무·농업·해양수산 | 6 | 3 | | | | | 3 |
| | 행정·세무·시설 | 7 | 5 | | | 2 | | |
| | 행정·세무·전산·농업 | 6 | 4 | | | 1 | | 1 |
| | 행정·전산·농업 | 2 | 1 | | | | 1 | |
| |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 3 | 2 | | 1 | | | |
| | 공업·환경·보건 | 1 | 1 | | | | | |
| | 행정·공업·시설 | 4 | 3 | | | | | 1 |
| | 행정·농업·녹지 | 2 | 1 | | 1 | | | |
| | 행정·농업·수의 | 1 | | | | | | 1 |
| | 행정·농업·시설·통신운영 | 7 | 3 | | 1 | | | 3 |
| | 행정·해양수산·시설 | 3 | 3 | | | | | |
| |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 8 | | 5 | | | | 3 |
| | 행정·시설·환경 | 3 | 3 | | | | | |
| | 행정·해양수산·보건 | 2 | | | | | 1 | 1 |
| | 보건·의료기술·간호·식품위생 | 6 | | 6 | | | | |
| | 행정·공업·환경·시설 | 6 | 6 | | | | | |
| | 행정·농업·녹지·환경 | 6 | 2 | | | | | 4 |
| | 전기운영·기계운영·화공운영 | 3 | 2 | | | | | 1 |
| | 행정·보건진료·간호·의료기술 | 2 | | 2 | | | | |

| 구분 | 직급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 (보좌기관포함) | 직속기관 | | 의회사무과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 | |
| 일반 | 7급 소계 | 197 | 98 | 20 | 11 | 6 | 9 | 53 |
| | 행정 | 19 | 13 | | 1 | 2 | 1 | 2 |
| | 세무 | 1 | 1 | | | | | |
| | 전산 | 1 | 1 | | | | | |
| | 사회복지·행정·시설 | 11 | 4 | | | | 1 | 6 |
| | 속기 | 1 | | | | 1 | | |
| | 공업 | 2 | 2 | | | | | |
| | 농업 | 1 | | | 1 | | | |
| | 녹지 | 2 | 2 | | | | | |
| | 해양수산 | 3 | 3 | | | | | |
| | 시설 | 16 | 10 | | 1 | | 1 | 4 |
| | 의료기술·간호 | 4 | | 4 | | | | |
| | 보건·간호 | 2 | | 2 | | | | |
| | 보건진료 | 6 | | 6 | | | | |
| | 환경 | 2 | 2 | | | | | |
| | 수의 | 2 | | | 2 | | | |
| | 운전 | 12 | 3 | 2 | | 1 | 2 | 4 |
| | 행정·세무 | 7 | 5 | | | | | 2 |
| | 행정·사회복지 | 7 | 4 | | | | | 3 |
| | 행정·공업 | 3 | 2 | | 1 | | | |
| | 행정·농업 | 19 | 6 | | 1 | | 1 | 11 |
| | 행정·시설 | 13 | 8 | | 1 | | | 4 |
| | 행정·환경 | 2 | 2 | | | | | |
| | 행정·방송통신 | 1 | | | | | | 1 |
| | 공업·환경·보건 | 1 | 1 | | | | | |
| | 농업·농촌지도사 | 1 | | | 1 | | | |
| | 농업·수의 | 1 | | | 1 | | | |
| | 보건·약무 | 1 | | 1 | | | | |
| | 보건·환경 | 1 | | 1 | | | | |
| | 행정·세무·농업 | 2 | | | | | | 2 |
| | 행정·세무·시설·방재안전 | 7 | 3 | | | 2 | | 2 |
| |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 4 | 1 | | 1 | | | 2 |
| | 행정·전산·시설 | 2 | 2 | | | | | |
| | 행정·농업·녹지 | 4 | 3 | | | | | 1 |
| | 행정·농업·보건 | 1 | | | | | | 1 |
| |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 10 | 7 | | | | 1 | 2 |
| | 행정·농업·해양수산 | 1 | | | | | | 1 |
| | 행정·농업·환경 | 3 | 1 | | | | | 2 |
| | 행정·환경·시설 | 2 | 1 | | | | | 1 |
| | 행정·공업·시설 | 3 | 3 | | | | | |
| | 행정·보건·환경 | 3 | 1 | | | | 1 | 1 |
| |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 4 | | 4 | | | | |
| | 행정·공업·보건·환경 | 3 | 2 | | | | | 1 |
| | 화공운영·기계운영·시설관리 | 3 | 3 | | | | | |
| |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 3 | 2 | | | | 1 | |

| 구분 | 직급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 | 직속기관 | | 의회 사무과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 기술센터 | | | |
| 일반 | 8급 소계 | 183 | 94 | 35 | 6 | 3 | 3 | 42 |
| | 행정 | 22 | 14 | | | 3 | | 5 |
| | 세무 | 1 | 1 | | | | | |
| | 사회복지 | 12 | 5 | | | | 1 | 6 |
| | 행정·농업·방호 | 1 | | | 1 | | | |
| | 공업 | 1 | | | 1 | | | |
| | 해양수산 | 2 | 2 | | | | | |
| | 보건 | 5 | 2 | 3 | | | | |
| | 간호 | 9 | | 9 | | | | |
| | 의료기술 | 6 | | 6 | | | | |
| | 보건진료 | 7 | | 7 | | | | |
| | 환경 | 1 | 1 | | | | | |
| | 시설 | 15 | 10 | | | | | 5 |
| |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 6 | 6 | | | | | |
| | 운전 | 6 | 1 | | | | | 5 |
| | 행정·세무 | 5 | 5 | | | | | |
| | 행정·사회복지·시설 | 10 | 6 | | | | 1 | 3 |
| | 행정·전산 | 1 | 1 | | | | | |
| | 행정·전산·농업 | 8 | 2 | | 1 | | | 5 |
| |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 5 | 3 | | | | | 2 |
| | 행정·시설·농업 | 11 | 9 | | 2 | | | |
| | 전산·방송통신 | 2 | 2 | | | | | |
| | 행정·공업·환경 | 5 | 5 | | | | | |
| | 농업·녹지 | 6 | 6 | | | | | |
| |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 6 | 1 | 5 | | | | |
| | 약무·보건 | 1 | | 1 | | | | |
| | 행정·세무·농업 | 6 | 2 | | | | | 4 |
| | 행정·농업·시설 | 9 | 5 | | 1 | | | 3 |
| | 행정·보건·환경 | 4 | 2 | | | | | 2 |
| | 행정·공업·시설 | 3 | 3 | | | | | |
| |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 7 | | 4 | | | 1 | 2 |

| 구분 | 직급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 | 직속기관 | | 의회 사무과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 기술센터 | | | |
| 일반 | 9급 소계 | 89 | 48 | 4 | 12 | 3 | 5 | 17 |
| | 행정 | 14 | 6 | | 2 | 2 | 2 | 2 |
| | 사회복지·시설 | 13 | 5 | | | | 1 | 7 |
| | 환경 | 2 | 2 | | | | | |
| | 공업 | 4 | 4 | | | | | |
| | 해양수산 | 1 | 1 | | | | | |
| | 보건 | 3 | 1 | 2 | | | | |
| | 운전 | 2 | | | | | | 2 |
| | 행정·세무 | 3 | 3 | | | | | |
| | 행정·사회복지 | 4 | 2 | | | | 1 | 1 |
| | 행정·농업 | 5 | 2 | | 2 | | | 1 |
| | 행정·시설·방호 | 11 | 9 | | 2 | | | |
| | 농업·녹지·시설 | 2 | 2 | | | | | |
| | 농업·공업 | 3 | | | 3 | | | |
| | 행정·세무·농업 | 2 | | | | | 1 | 1 |
| | 행정·전산·통신 | 4 | 3 | | 1 | | | |
| | 행정·세무·시설 | 3 | 3 | | | | | |
| | 행정·사회복지·농업 | 1 | | | | | | 1 |
| | 행정·농업·녹지 | 5 | 2 | | 2 | | | 1 |
| |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 5 | 3 | | | 1 | | 1 |
| |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 | 2 | | 2 | | | | |

| 구분 | 직급별 / 기관별 | 합계 | 본청 | 직속기관 | | 의회 사무과 | 읍 | 면 |
|---|---|---|---|---|---|---|---|---|
| | | | | 보건소 | 농업 기술센터 | | | |
| 별정 | **별정직 계** | 3 | 3 | | | | | |
| | **5급 상당 소계** | 0 | | | | | | |
| | 행정·별정 | 0 | | | | | | |
| | **6급 상당 소계** | 1 | 1 | | | | | |
| | 의회전문위원 | 0 | | | | | | |
| | 비서 | 1 | 1 | | | | | |
| | **7급 상당 소계** | 1 | 1 | | | | | |
| | 비서 | 1 | 1 | | | | | |
| | **8급 상당 소계** | 1 | 1 | | | | | |
| | 비서 | 1 | 1 | | | | | |
| 연구 | **연구직 계** | 2 | 2 | | | | | |
| | 학예연구사 | 1 | 1 | | | | | |
| | 기록연구사 | 1 | 1 | | | | | |
| 지도 | **지도직 계** | 25 | | | 25 | | | |
| | 농촌지도사 | 25 | | | 25 | | | |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62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단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바목을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 투자유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 등”을 “국·소·관·과 등”으로 한다

③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과·소”를 각각 “부서”로 하고, 제13조 중 “과·소”를 “부서”로 한다.

⑥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⑦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단·과”를 “부서”로, “단·과장”을 “부서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3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제7조제1항 중 “국·소장 및 단·과장”을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국·소 및 단·과 단위”를 “국·소 및 부서 단위”로, 제7조제3항 “소관 단·과장”을 “소관 부서장 ”으로, 제8조제2항 중 단·과 업무담당주사”를 “부서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 단·과”를 “담당 부서”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단·과”를 “본청, 국·관·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단·과”를 “소속 부서”로,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단·과”를 “부서”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소·단·과”를 “부서”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소·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과·소명”을 “소·단·과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단·과별”을 “부서별”로 한다.

⑨ 「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제5호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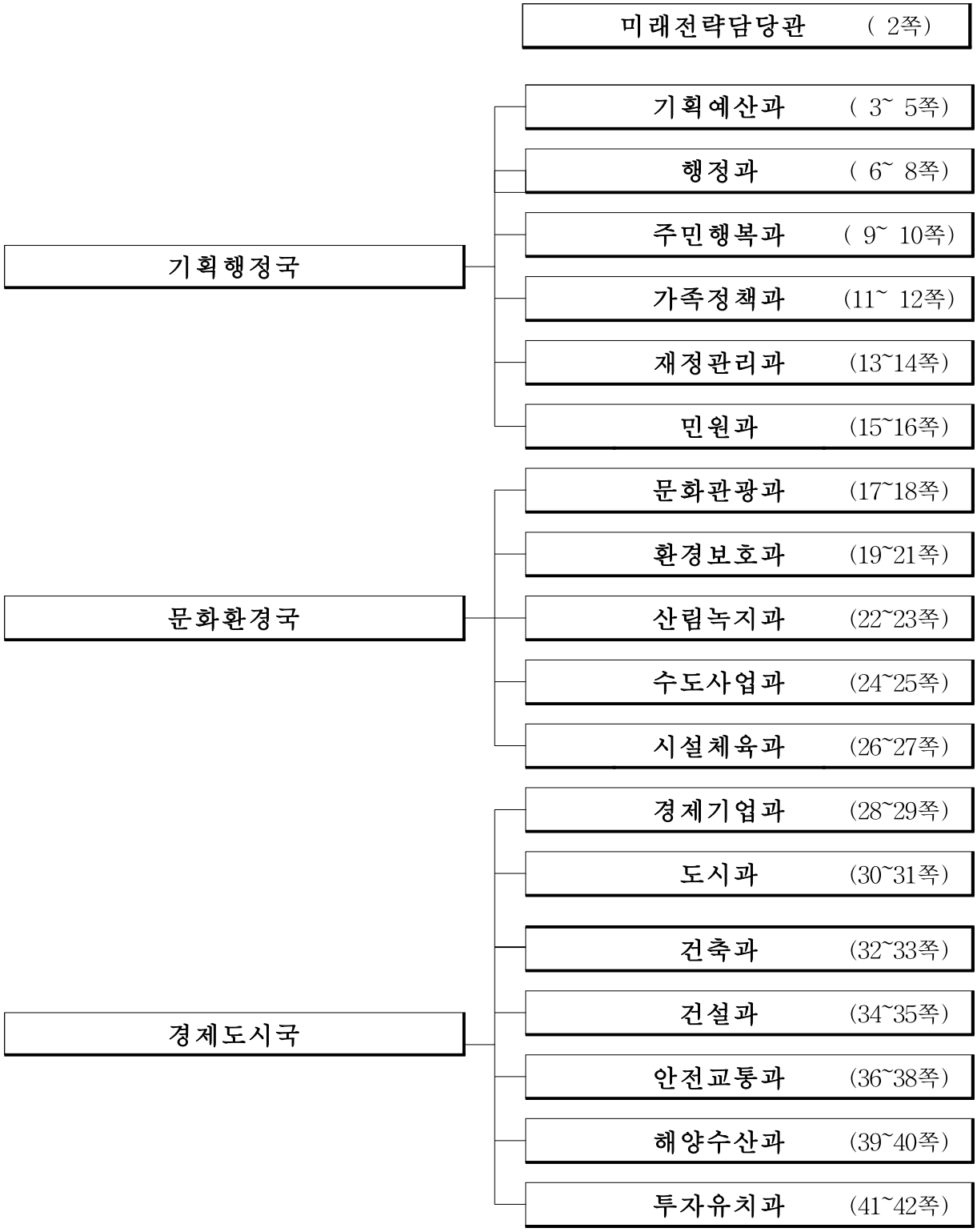

# 미래전략담당관

| 담당 | 분장 사무 | |
|---|---|---|
| 성과관리 | 엑스포 후속조치 및 대외적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군수공약사항 추진평가 |
| | 2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관리 |
| | 3 | 정부(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총괄 |
| | 4 | 국민신문고 제안 관리 |
| | 5 | 통합 성과관리 및 평가 |
| | 6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산관리 |
| | 7 | 상급기관 평가 총괄 |
| | 8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 9 | 엑스포 후속활용(부지 및 시설활용, 후속 프로그램 등 개발) |
| | 10 | 군정평가위원회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청년정책 | 청년정책 지원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
| | 1 | 청년 기본정책 수립 |
| | 2 | 청년센터 운영 |
| | 3 | 하동드림스테이션 조성 및 관리 |
| | 4 | 청년업무 전반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인구정책 |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
| | 1 | 인구증가 종합추진계획 수립 |
| | 2 | 인구증가 시책추진 |
| | 3 | 출산장려시책 지원 |
| | 4 | 저출산대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귀농귀촌 |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 |
| | 1 |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 | 2 |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 | 3 |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
| | 4 |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

## 1.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전략기획 |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
| | 1 | 각종 공모사업 총괄추진 및 신규 발굴 공모 |
| | 2 |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균형발전 포괄보조 사업 평가 총괄 |
| | 3 |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
| | 4 | 부서 업무의 기획 조정 |
| | 5 | 중장기 정책 계획 및 조정 |
| | 6 | 군정혁신(정부혁신, 도정혁신) 업무 총괄 |
| | 7 |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
| | 8 | 정책실명제 계획수립 및 공표 |
| | 9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 | 10 |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
| | 11 | 외국인 등록 및 통계 |
| | 12 |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
| | 13 |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 | 14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
| | 15 |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
| | 16 |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 총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예산 |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
| | 1 |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 | 2 |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 | 3 |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
| | 4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
| | 5 |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
| | 6 | 지방보조금 편성·심의회 총괄 |
| | 7 |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
| | 8 | 지방기금 운영 총괄 |
| | 9 |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
| | 10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홍보 |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 |
| | 1 | 홍보 계획 수립 |
| | 2 | 군정홍보 및 보도(SNS 업무 포함) |
| | 3 |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
| | 4 |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청렴감사 |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 |
| | 1 |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
| | 2 |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
| | 3 |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
| | 4 |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
| | 5 |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
| | 6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
| | 7 | 계약심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법무 지원 | 법제, 송무, 행정심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
| | 1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관련 사항 |
| | 2 |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 | 3 | 법률정보서비스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 | 4 | 각종 규제 발굴 및 개혁에 관한 사항 |
| | 5 |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관련 사항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교류 협력 |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
| | 2 | 신규 해외 교류도시 발굴 |
| | 3 | 남중권·지리산권 등 시군협력업무 발굴 |
| | 4 | 국제파견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
| | 5 |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
| | 6 |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
| | 7 |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

# 행정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행정 |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공무원 인사, 표창, 징계, 조직관리 |
| | 2 | 호봉승급 및 호봉 재획정 |
| | 3 |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
| | 4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
| | 5 | 공무원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
| | 6 |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
| | 7 | 여론, 의전관리 |
| | 8 |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
| | 9 |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
| | 10 |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
| | 11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
| | 12 | 국가기반체계 보호 |
| | 13 |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
| | 14 |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
| | 15 | 외국인 주민 지원 |
| | 16 | 행정서비스 헌장관리 |
| | 17 | 하동군 명예군민 선정 및 관리 |
| | 18 | 전국이통장협의회 |
| | 19 | 관내 기관단체장 관리 |
| | 20 | 도지사 • 시장 • 군수 방문 |
| | 2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리 및 지원 |
| | 22 | 읍면 행정종합실적평가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혁신지원 |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 |
| | 1 | 복무, 보안, 공인, 당직 관리 |
| | 2 | 사회적혁신(사회적혁신정책, 갈등) 업무 총괄 |
| | 3 | 공무직 인사관리 |
| | 4 | 공무국외출장 허가 |
| | 5 | 맞춤형복지제도, 동호회, 휴양시설 운영 |
| | 6 | 분권, 주민자치 업무 |
| | 7 | 4대보험, 공무원연금, 행정공제회, 직장금고 관리 |
| | 8 |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
| | 9 |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업무 |
| | 10 | 우편물, 적십자회비, 국기게양 업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정보통신 |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
| | 2 |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문서 시스템 구축 운영 |
| | 3 | 정보전산 보안관리 |
| | 4 | 개인정보보호관리 |
| | 5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
| | 6 |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
| | 7 |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
| | 8 | 업무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관리 |
| | 9 | 정보전산 장비 및 전산실 운영 관리 |
| | 10 | 하동군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 | 11 | 지역정보화 업무 추진 |
| | 12 | SW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
| | 13 | 모바일소통행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14 | 통신실·교환실 관리 |
| | 15 | 보안성 검토 협의 |
| | 16 | 통신보안 시스템 관리 |
| | 17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도 확인 |
| | 18 | 인터넷 전화망 및 전화교환시스템 관리 |
| | 19 |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
| | 20 | 행정 통신망 네트워크 관리 |
| | 21 | 무선인터넷 존 구축 및 관리 |
| | 22 | 행정방송 및 방송실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평생학습 |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
| | 1 |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
| | 2 | 교육환경개선사업 |
| | 3 | 서민자녀교육지원 |
| | 4 | 하동군장학재단운영지원 |
| | 5 | 평생학습정책개발 및 연구 |
| | 6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 7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
| | 8 |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상호연계체계 구축 |
| | 9 |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 | 10 | 읍면 평생학습 운영 관리 |
| | 11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전문성 향상 |
| | 12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교육혁신 |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 |
| | 1 | 하동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 | 2 | 하동교육발전을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 운영 |
| | 3 | 특화(명문) 학교 육성 추진 |
| | 4 |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 | 5 |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
| | 6 |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추진 |
| | 7 | 간부공무원 역량 및 리더십 교육추진 |
| | 8 | 직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추진 |

# 주민행복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복지기획 |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
| | 1 |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평가 |
| | 2 |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
| | 3 |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리(보훈수당 지원 등) |
| | 4 | 재해 구호업무 및 재난관리 자원 및 창고 관리 |
| | 5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총괄 |
| | 6 | 읍면 복지회관(목욕탕) 관리 |
| | 7 | 충혼탑 및 독립공원 관리 |
| | 8 | 사회복무요원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자활업무에 관한 사항 | |
| | 1 |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
| | 2 | 생활안정자금 관리 |
| | 3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
| | 4 | 사랑의 주택 관리 |
| | 5 | 정부양곡, 차상위계층 관리 및 멘토링 사업 시행 |
| | 6 | 초중고교육비 및 학업증진사업 |
| | 7 | 노숙인, 행려사망자 관리에 관한 사항 |
| | 8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 | 9 | 자활센터 관리 |
| | 10 | 자활기금 특별회계 관리 |
| | 11 |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
| | 1 |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 |
| | 2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
| | 3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 | 4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
| | 5 |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
| | 6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 | 7 | 장애인등록 및 관리 |
| | 8 |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 |
| | 9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희망복지지원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
| | 1 |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
| | 2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
| | 3 |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
| | 4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 | 5 | 읍면동 맞춤형복지통합서비스 |
| | 6 | 복지사각지대 발굴 |
| | 7 |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
| | 8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
| | 9 | 명절위문사업 |
| | 1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후원 기탁사업 |
| | 11 | 행복천사이음뱅크 자원관리 및 연계 |
| | 1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 13 | 기초푸드뱅크 사업 지원 |
| | 14 | 긴급복지지원 |
| | 15 |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
| | 16 |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
| | 17 | 안전문화 확산(119희망의집) 지원 |
| | 18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추진 |
| | 19 | 복지종합상담창구 운영 |
| | 20 |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통합조사관리 |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
| | 2 |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
| | 3 |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 | 4 |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
| | 5 |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

# 가족정책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아동 청소년 | 보육·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 |
| | 1 | 보육·아동·청소년 관련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
| | 2 |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
| | 3 | 어린이집 설치(폐지) 인가 및 지도 감독 |
| | 4 |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종사자(보육교직원) 관리 |
| | 5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 및 대상자 관리 |
| | 6 | 보육관련 단체 행사지원 및 관리 |
| | 7 |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 등) 설치(폐지) 인가 |
| | 8 |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 등)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
| | 9 | 요보호아동 관리 및 지원 |
| | 10 | 결식아동 보호지원 |
| | 11 |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
| | 12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
| | 13 | 아동수당 지급 및 관리 |
| | 14 | 아동학대 신고접수 · 조사 업무 및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 |
| | 15 | 아동관련행사(어린이날행사 등) 추진 및 단체 지원 |
| | 16 | 장난감은행 및 마을 어린이놀이터 관리 |
| | 17 |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18 |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 감독 |
| | 19 |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
| | 20 |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여성 정책 |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 |
| | 1 |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
| | 2 |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
| | 3 | 양성평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지원 |
| | 4 | 여성폭력예방사업 추진 |
| | 5 |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총괄 관리 |
| | 6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및 관리 |
| | 7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
| | 8 |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
| | 9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 | 10 |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 |
| | 11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노인복지 |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
| | 1 |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
| | 2 |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
| | 3 | 다목적회관(마을회관, 경로당 등) 활성화 사업 및 지원 |
| | 4 | 기초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
| | 5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
| | 7 | 노인대학(원) |
| | 8 | 노인단체, 노인인권, 노인관련 행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노인시설 | 노인시설,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 |
| | 1 | 장사업무 및 장사시설 관리 |
| | 2 | 장례지원(무연고자) |
| | 3 | 치매요양원 관리 |
| | 4 | 노인장애인복지관 관리 |
| | 5 | 노인장기요양 전반(요양시설, 재가시설) |
| | 6 | 화장장려금 |
| | 7 | 중대재해 |
| | 8 | 다목적회관 개보수 및 신축 |

# 재정관리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세정 |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 |
| | 1 |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증대 시책 추진 |
| | 2 |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과세결정 |
| | 3 | 지방세 세무조사 |
| | 4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 | 5 | 지방세 구제업무 |
| | 6 |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
| | 7 | 기타 지방세 부과 |
| | 8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 | 9 | 지방세 목표액 관리 및 세수추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경리 |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 |
| | 1 |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
| | 2 |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
| | 3 |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
| | 4 | 국·도비 재배정 사업 지출 |
| | 5 |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및 계약관리 |
| | 6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
| | 7 | 복식부기 및 재무결산 |
| | 8 | 일반지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부) |
| | 9 | 소득세 등 신고 납부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세입 | 세입·체납관리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 |
| | 1 | 세외수입 총괄관리 |
| | 2 |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
| | 3 |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
| | 4 | 기부금품 접수 심의 |
| | 5 | 세입결산(지방세·세외수입) |
| | 6 | 국도비 보조금 세입관리 |
| | 7 |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및 수입증지관리 |
| | 8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
| | 9 | 체납액 징수(지방세·세외수입) |
| | 10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처분(압류, 공매의뢰, 추심 등) |
| | 11 |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제재) |
| | 12 |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
| | 13 | 정리보류(결손처분) |
| | 14 | 지방세·세외수입 기동징수(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재산세 | **개별주택가격 관리, 재산세, 주민세 부과에 관한 사항** | |
| | 1 |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
| | 2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결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 |
| | 3 | 재산세과세대장 관리 |
| | 4 |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선박·항공기) 부과 |
| | 5 | 주민세 부과 및 과세결정 |
| | 6 |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공유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항 사항** | |
| |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
| | 2 | 공유재산(군•도유),일반재산 관리(공유재산심의회,취득,처분,대부,용도폐지,용도변경 등) |
| | 3 | 공유재산 실태조사 총괄 |
| | 4 |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
| | 5 | 전기, 수도, 냉난방 유지관리 |
| | 6 | 공공건물 공제 등록 |
| | 7 |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
| | 8 | 물품출납 및 보관 처분 |

# 민원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종합민원 |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처리에 관한 사항 | |
| | 1 | 민원안내 및 상담 |
| | 2 | 민원(일반,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 점검 |
| | 3 | 민원처리기간 70% 단축 |
| | 4 |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
| | 5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 |
| | 6 | 정부24 운영 |
| | 7 |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
| | 8 | 고객만족도설문조사 |
| | 9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
| | 10 |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
| | 11 | 행정정보공개 운영 |
| | 12 | 행정정보공동이용 |
| | 13 |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토지정보 |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 | 1 |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
| | 2 | 지적 측량 검사 |
| | 3 | KRA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
| | 4 |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
| | 5 |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
| | 6 |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
| | 7 |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
| | 8 |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
| | 9 |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
| | 10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 | 1 |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
| | 2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
| | 3 |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지급·징수·공탁 |
| | 4 |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관리 |
| | 5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
| | 6 |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공간정보 | 공간정보,도로명주소,개별공시지가 관리,개발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 | |
| | 1 | 공간정보에 관한 사무 |
| | 2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
| | 3 |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 | 4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 | 5 |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
| | 6 |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무 |
| | 7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
| | 8 | 부동산 실명법 운영 |
| | 9 | 부동산 중개업 관리 |
| | 10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결정·공시 등에 관한 사항 |
| | 11 | 개발부담금 조사·산정 및 부과, 자료 관리 |
| | 12 |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 | 13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 2. 문화환경국

### 문화관광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문화예술 |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 | 1 | 지방문화예술 진흥 |
| | 2 |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
| | 3 |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
| | 4 |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 5 |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
| | 6 | 공연장 등록 관리 |
| | 7 |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 | 8 | 문화시설 사업추진 |
| | 9 | 하동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 10 |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 | 11 | 우리말 바르게 쓰기 추진 |
| | 12 |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예술행사 지원 |
| | 13 | 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
| | 14 |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 |
| | 15 |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 |
| | 16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문화유산 |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
| | 1 | 문화유산 재난방지 시설 및 인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 | 2 | 무형유산 지정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 3 | 국·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 | 4 | 문화유산(자연유산) 활용에 관한 사항 |
| | 5 |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지정병원(치료센터) 인계에 관한 사항 |
| | 6 | 역사문화권 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 7 | 향토유산 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 | 8 | 판소리기념관 운영 및 관리 |
| | 9 | 이순신 유숙지 등 백의종군로 운영 및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관광개발 | 관광종합개발계획,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
| | 1 |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
| | 2 | 신규관광자원 개발 |
| | 3 | 유원시설업 및 야영업 등록관리 |
| | 4 | 캠핑장 등록 업무 |
| | 5 | 관광단지 트레킹·힐링공원 조성사업 |
| | 6 |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
| | 7 | 지리산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
| | 8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지원업무 |
| | 9 | 관광지 지정 및 개발 |
| | 10 | 청학동 관광지 개발사업 |
| | 11 |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12 | 권역별 관광기반 조성 |
| | 13 | 익사이팅 레포츠 개발사업 |
| | 14 | 폐철도 관광자원개발사업 |
| | 15 | 남해안권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 | 16 |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
| | 17 |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 | 18 | 관광 관련 민자유치 계획수립 및 추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슬로시티 |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 |
| | 1 |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
| | 2 | 관광 홍보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 3 |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
| | 4 | 관광객 안내(팸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
| | 5 |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
| | 6 |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
| | 7 |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
| | 8 |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
| | 9 | 관광상품 개발 |
| | 10 |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
| | 11 |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
| | 12 | 관광 통계 업무추진 |
| | 13 | 캠핑장 유지관리 |

## 환경보호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환경정책 | 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
| | 1 | 기후변화적응 대책 및 탄소포인트제 추진 |
| | 2 | 수질오염총량제 추진(낙동강, 섬진강) |
| | 3 | 수변구역관리 및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
| | 4 | 수계기금관리 |
| | 5 |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
| | 6 | 황사피해·오존 예방대책 추진 |
| | 7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 | 8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협의 |
| | 9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및 환경위원회 운영관리 |
| | 10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
| | 11 |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전개 |
| | 12 | 토양, 실내공기질, 빛공해 관리 |
| | 13 |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및 운영 |
| | 14 | 수질 및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
| | 15 | 어린이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
| | 16 | 녹색제품 구매촉진 |
| | 17 | 환경단체 지원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환경지도 |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 |
| | 1 |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 | 2 |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
|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 | 4 | 생활 소음, 진동, 악취 관리 |
| | 5 | 수질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및 예방관리 |
| | 6 |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지원 |
| | 7 |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
| | 8 |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구조 |
| | 9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
| | 10 |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
| | 11 |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사업 추진 |
| | 12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피해방지단운영, 수렵장 운영 |
| | 13 |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
| | 14 | 사업장, 건설, 의료, 지정폐기물 허가 및 지도점검 |
| | 15 | 폐기물처리신고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 |
| | 16 |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및 위반사업장 단속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자원순환 |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 |
| | 1 |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
| | 2 |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
| | 3 |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및 기금조성 |
| | 4 | 생활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수거대책 수립 |
| | 5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단속 |
| | 6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및 다량배출업소 관리 |
| | 7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 | 8 |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총괄관리 |
| | 9 | 농촌농업 폐비닐관리 및 공동집하장 설치 |
| | 10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
| | 11 | 1회용품, 과대포장상품 지도점검 |
| | 12 | 쓰레기 집하시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관리 |
| | 13 |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및 나눔장터 개최 |
| | 14 | 국토대청소 운동,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
| | 15 | 환경미화원 관리 총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생태환경 |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 |
| | 1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관리 |
| | 2 | 자연생태해설사 및 지도사 육성 및 지원 |
| | 3 | 습지보전 및 관리 |
| | 4 | 탄소없는마을 조성 및 추진 |
| | 5 |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
| | 6 |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사업 추진 |
| | 7 |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추진 |
| | 8 | 특정도서의 관리 |
| | 9 |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추진 |
| | 10 |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추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환경시설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 |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 |
| | 2 |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
| | 3 |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 및 대금관리 |
| | 4 | 일반차량 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관리 |
| | 5 | 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 | 6 | 생활폐기물처리장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

# 산림녹지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산림정책 |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산림정책 종합기획 |
| | 2 |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
| | 3 | 산림분야종묘업등록및양묘생산·수급관리 |
| | 4 |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
| | 5 | 산림분야 공모사업 |
| | 6 |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
| | 7 | 농림사업(임업 산촌분야) 취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 | 8 |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
| | 9 | 임산물 소득사업 재해에 관한 사항 |
| | 10 |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
| | 11 | 백두대간 지원업무 |
| | 12 | 산림통계(산림기본통계, 임산물 생산통계) |
| | 13 |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
| | 14 | 밤나무 재배관리 |
| | 15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임업분야 업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산림보호 |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
| | 1 |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 | 2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 인력 및 장비 관리 |
| | 3 |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
| | 4 |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 등)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
| | 5 | 일반병해충 방제(솔껍질깍지벌레, 꽃매미 등) |
| | 6 |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반 운영 관리) |
| | 7 | 정책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
| | 8 |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관리) |
| | 9 |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굴삭기, 우드그랩 등) |
| | 10 | 산림사법업무(피의자 신문, 사건송치 등) |
| | 11 | 불법산림훼손 및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지도 단속 및 산지 정화 |
| | 12 | 불법산림훼손지 복구 및 관리 |
| | 1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시료채취 검경 등) |
| | 14 | 소나무재선충병 검인찍기 및 생산확인표 발급 |
| | 15 |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신고 |
| | 16 |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
| | 17 | 송림공원 관리 |
| | 18 | 자연공원(국립공원, 고소성군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
| | 19 |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관리 |
| | 20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증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산림경영 |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 |
| | 1 |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
| | 2 | 구역 등의 지정 협의 |
| | 3 |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 | 4 | 산림재해 대책 및 복구(산사태 등) |
| | 5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 |
| | 6 | 임도 계획수립 및 개설, 관리 |
| | 7 |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
| | 8 | 사방지·보안림 지정 관리 |
| | 9 | 등산로 정비계획 및 조성관리 |
| | 10 | 임업진흥권역 관리 |
| | 11 | 산림복원 업무 |
| | 12 | 산림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
| | 13 | 회남재 숲길 걷기 행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산림휴양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 |
| | 1 |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
| | 2 | 치유의 숲 조성사업 |
| | 3 | 유아숲 등 체험숲 조성 및 관리 |
| | 4 | 생태숲 조성 및 관리 |
| | 5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
| | 6 | 산림복지단지 조성 |
| | 7 |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사 관리 |
| | 8 | 삼화에코하우스 관리 |
| | 9 | 산림레포츠 조성 |
| | 10 |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관리 |
| | 11 | 기타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녹지조경 | 도시숲(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 |
| | 1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 | 2 |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
| | 3 | 명상숲 조성 업무 |
| | 4 |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
| | 5 | 특색있는 하동숲 조성사업 |
| | 6 | 지방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
| | 7 | 마을쉼터 조성, 유지관리 |
| | 8 |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
| | 9 | 녹지네트워크구축기본계획수립추진 |
| | 10 | 도시림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숲 조성 |
| | 11 | 화개장터 벚꽃축제 |

# 수도사업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상수도 운영 | 상수도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상수도 운영 총괄 및 조직관리, 경영혁신 · 합리화에 관한 사항 |
| | 2 | 물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
| | 3 | 취 · 정수장 운영 및 관리 |
| | 4 | 저수조 청소(업) 관리 |
| | 5 | 상수도 관리원 운영 및 상수도 사용량 검침 |
| | 6 | 상수도요금 부과 · 징수 및 요율조정 |
| | 7 | 상수도 주요정책 총괄 및 운영평가 등 관련 업무 |
| | 8 | 예산 편성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
| | 9 | 상수도 통계조사 및 상수도관련 조례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상수도 시설 | 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 |
| | 1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 | 2 | 상수도 송 · 배수 및 상수관로와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
| | 3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시행 |
| | 4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 | 5 |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시행 및 관리 |
| | 6 | 급수공사 승인 |
| | 7 | 노후 상수관로 정비 |
| | 8 | 누수탐사 및 누수사고 복구 |
| | 9 |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
| | 10 |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하수도 시설 | 하수도에 관한 사항 | |
| | 1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 | 2 | 공공(일반, 소규모, 면단위)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 | 3 | 하수관로의 정비 및 설치사업 |
| | 4 |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
| | 5 | 하수처리구역 관리 |
| | 6 | 하수도 관련 조례 제·개정 |
| | 7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
| | 8 | 분뇨 등 관련영업 인·허가 및 관리 |
| | 9 | 하수도 통계 작성 및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 | 10 |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관리 |
| | 11 |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
| | 12 | 하수도대장(관망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하수도 운영 |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공공(일반, 소규모, 면단위)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
| | 2 |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사업 |
| | 3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 | 4 |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기술진단, 악취진단 및 개선사업 |
| | 5 | 하수도 준설사업 |
| | 6 | 침사물(협잡물) 및 공공하수도 슬러지 위탁처리에 관한 영역 |
| | 7 |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
| | 8 | 공공하수도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리 |
| | 9 | 공공하수도 민간위탁(관리대행)사무 운영 관리 |
| | 10 |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분석 |
| | 11 | 하수시설 관리원 운영 및 하수사용량 검침 |

# 시설체육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체육정책 |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
| | 1 | 체육진흥업무 활성화 추진 |
| | 2 | 스포츠마케팅 사업 |
| | 3 | 각종 체육행사 추진 |
| | 4 | 하동군체육회 업무 지원 |
| | 5 | 생활체육 업무추진 및 동호인 단체 육성 관리 |
| | 6 | 체육시설 등록 신고 및 지도 감독 |
| | 7 | 일반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 |
| | 8 | 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체육기반 | 체육기반에 관한 사항 | |
| | 1 | 체육시설기반 확충사업 |
| | 2 | 스포츠파크 조성 |
| | 3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
| | 4 | 체육시설 설치사업 |
| | 5 |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
| | 6 | 파크골프장 조성 |
| | 7 |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보상업무 |
| | 8 | 체육공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
| | 2 | 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추진 |
| | 3 |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
| | 4 |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
| | 5 | 공공체육시설 운영 인력 채용 및 관리 |
| | 6 |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수행 |
| | 7 |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br>(하동공설운동장, 하동체육관, 농어촌복합체육관, 보조구장) |
| | 8 | 생활체육공원 및 체육관 관리 및 운영 |
| | 9 | 게이트볼장 운영 및 관리 |
| | 10 |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 |
| | 11 | 그라운드골프장 운영 및 관리 |
| | 12 | 궁도장·족구장·활공장·풋살장 관리 |
| | 13 | 섬진강수변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 | 14 |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 |
| | 15 |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유지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문화관광시설 | 문화·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 | 2 |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
| | 3 |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
| | 4 | 문학관 운영 및 관리 |
| | 5 |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
| | 6 |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
| | 7 | 케이블카, 짚라인, 레일바이크,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만남의광장, 진교전망대, 금오산 하늘길, 최참판댁 한옥시설 운영 등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공단설립 | 공단설립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 |
| | 1 |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 |

## 3. 경제도시국

### 경제기업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시장 | 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 |
| | 1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
| |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
| | 3 |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 및 관리 |
| | 4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
| | 5 |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 | 6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 | 7 |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
| | 8 |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
| | 9 | 공산품 품질관리 |
| | 10 | 상품권 발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11 | 특수거래업 관리에 관한 사항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 | |
| | 1 |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
| | 2 | 취업알선 및 일자리센터 운영 |
| | 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 | 4 |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 5 |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 |
| | 6 |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 7 |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 | 8 | 공유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
| | 9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 10 |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 |
| | 11 | 첨단기술활용 스마트지원사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기업지원 | 중소·사회적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외의 사항)에 관한 사항 | |
| | 1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 2 |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
| | 3 |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 | 4 |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 5 |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6 |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
| | 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에너지 |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
| | 2 | 도시가스 공급사업 |
| | 3 |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
| | 4 |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
| | 5 |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
| | 6 | 광업 및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
| | 7 |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 | 8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

# 도시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미래도시 |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1 |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
| | 2 |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
| | 3 |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
| | 4 | 개발촉진지구 지정 |
| | 5 | 경전선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 | 6 | 1970관 관리 |
| | 7 | 예인촌 펜션단지 유지관리 |
| | 8 | 스마트시티 관련 사무 |
| | 9 | 자전거도로 관련 사무 |
| | 10 | 지역개발사업 추진<br>(이화만사성, 민다리 문화공원, 인문학길,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 등) |
| | 11 | 지중화사업 추진 |
| | 12 | 광역권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
| | 13 | 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 | 14 | 미래도시 기본계획 및 공모사업 발굴 |
| | 15 | 도시계획 입안 시행 |
| | 16 | 자문단 운영 및 관리 |
| | 17 | 지역 특화사업 발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도시건축 | 공공건축가, 공공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관련 업무 |
| | 2 | 총괄・공공건축가 정책발굴 및 홍보관련 업무 |
| | 3 | 공공건축물 설계(기획) 등에 관한 업무 |
| | 4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
| | 5 | 공공건축 건립설계 및 시공 발주계획 수립, 준공검사 |
| | 6 | 공공건축물 감독, 품질관리 |
| | 7 |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 관련 업무 |
| | 8 | 하동군 경관 조례 관리 |
| | 9 |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 |
| | 10 | 경관개선사업 추진 |
| | 11 |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 |
| | 12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발굴 추진 |
| | 13 | 타 부서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 |
| | 14 |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도시재생 |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
| | 1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 | 2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
| | 3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
| | 4 |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공모 |
| | 5 | 도시재생 연계사업 발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지역활력 |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준비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 | 2 |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 유지관리 |
| | 3 | 중간지원조직 관리 및 운영 |
| | 4 |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
| | 5 | 군 지역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추진 |
| | 6 | 지역발전사업 평가 총괄 |
| | 7 | 시군 창의사업 |
| | 8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지역개발 |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
| | 1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 선도, 일반) |
| | 2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 | 3 | 권역단위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
| | 4 |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
| | 5 | 신규마을조성사업 |
| | 6 |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
| | 7 | 나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건축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건축 행정 |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 |
| | 1 | 하동군 건축 조례(시행규칙), 하동군 건축기본 조례,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하동군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조례, 하동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
| | 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동군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 |
| | 3 | 지역건축사 지도 및 관리 |
| | 4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br>[빈집정비, 주택개량, 농촌 집 고쳐주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 | 5 |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
| | 6 |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
| | 7 | 주택관리사 및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 추진 |
| | 8 |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
| | 9 | 소규모 주택정비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 | 10 |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관리, 분양승인 등 |
| | 11 |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건축 민원 |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 |
| | 1 |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
| | 2 |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 및 신고업무 |
| | 3 |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
| | 4 |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
| | 5 |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
| | 6 |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
| | 7 | 건축행정시스템 및 통계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복합 민원 |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 |
| | 1 |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
| | 2 |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
| | 3 |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
| | 4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건축 안전 | 건축분야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각종 재난관리, 안전점검 총괄 |
| | 2 | 건축분야 안전점검 및 민원처리 |
| | 3 |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
| | 4 |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
| | 5 | 건축물 점검계획 매뉴얼 수립 |
| | 6 | 건축물 점검 및 개량,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
| | 7 | 건축물 관리계획서 확인 검토 |
| | 8 | 재해주택 관리 및 지원 |
| | 9 |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관리 |

# 건설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건설행정 |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 | 1 | 도로교통량 조사 |
| | 2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
| | 3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 | 4 |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 | 5 |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 | 6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
| | 7 |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
| | 8 |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
| | 9 |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농업기반 |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
| | 1 |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
| | 2 | 경지정리 사업 |
| | 3 | 농업용수 개발 |
| | 4 |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 | 5 |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
| | 6 |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
| | 7 | 정주권 개발사업 |
| | 8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 | 9 | 밭기반 조성사업 |
| | 10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 | 11 |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도로 |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
| | 2 |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
| | 3 | 접도구역 관리 |
| | 4 |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
| | 5 |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
| | 6 |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 | 7 |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 | 8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 | 9 | 도로 설해대책 |
| | 10 | 관내 도로 교량관리 |
| | 11 |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
| | 12 |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
| | 13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
| | 14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하천 |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하천 정비·유지관리 |
| | 2 |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
| | 3 |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 | 4 |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

# 안전교통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안전기획 |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
| | 2 |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관리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
| | 3 |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
| | 4 |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
| | 5 |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
| | 6 |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
| | 7 | 승강기 관리 업무 |
| | 8 |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
| | 9 | 지역축제안전관리 |
| | 10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
| | 11 |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
| | 12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 | 13 | 안전문화운동 추진 |
| | 14 | 안전한국훈련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자연재난 |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
| | 1 | 지역방재 계획 수립 |
| | 2 |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
| | 3 |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
| | 4 |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
| | 5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 | 6 | 재해 사전대비 업무 |
| | 7 | 풍수해 보험 업무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민방위 관제 |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
| | 1 |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
| | 2 |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
| | 3 |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
| | 4 | 예비군 육성 지원 |
| | 5 | 사회복무요원 관리 |
| | 6 |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
| | 7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
| | 8 | 가로등(보안등) 설치 |
| | 9 |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
| | 10 |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
| | 11 |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
| | 12 |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
| | 13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
| | 14 |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
| | 15 | CCTV 통신회선 운영 관리 |
| | 16 | 관제요원 인건비 관리 |
| | 17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관리 |
| | 18 | 재난전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관리 |
| | 19 | 스마트 모바일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관리 |
| | 20 | 유동인구 분석시스템 운영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중대재해예방 | 중대재해예방 및 처벌에 관한 사항 | |
| | 1 | 중대재해예방 종합 계획 수립 및 점검 |
| | 2 | 중대재해 부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총괄 업무 |
| | 3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 4 | 중대재해 부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소관부서 의무이행 사항 점검·지원 |
| | 5 | 중대재해 부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이행 |
| | 6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 파악 및 점검 |
| | 7 | 사업장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 |
| | 8 | 안전·보건 관련 규정 관리 |
| |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선진교통 |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 | 1 |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
| | 2 |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
| | 3 |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
| | 4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
| | 5 |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
| | 6 |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
| | 7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
| | 8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 해양수산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해양개발 |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
| | 2 |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
| | 3 |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 4 |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
| | 5 |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
| | 6 |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
| | 7 |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
| | 8 |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 | 9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
| | 10 |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
| | 11 |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어업생산 |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
| | 2 |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
| | 3 |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
| | 4 |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
| | 5 | 어선등록 및 관리 |
| | 6 |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
| | 7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내수면개발 |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내수면어업 진흥 및 발전 종합대책 수립 |
| | 2 |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어업 처분 및 지도 감독 |
| | 3 |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
| | 4 | 내륙어촌 재생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5 | 내수면 특산수산물 축제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 | 6 | 섬진강 재첩축제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섬진강 관리 |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
| | 2 | 섬진강 유지관리 |
| | 3 |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
| | 4 |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
| | 5 |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
| | 6 | 국가하천(섬진강 구역) 공유(국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
| | 7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 투자유치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투자정책 |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
| | 1 |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
| | 2 | 투자유치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업무 |
| | 3 | 투자유치 주요 정책동향 작성 및 분석 |
| | 4 | 경제자유구역관련 조합회의 및 제도개선 업무 |
| | 5 |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
| | 6 | 투자유치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및 관리 |
| | 7 |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 | 8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및 관리 |
| | 9 |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및 관리 |
| | 10 | 산단 소송 지원 |
| | 11 | 산단 고소·고발 업무 추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투자유치 |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 |
| | 1 | 경제자유구역 전략산업 투자유치 추진 |
| | 2 | 대규모 앵커기업 투자유치 |
| | 3 | 잠재적 투자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
| | 4 | 투자유치 설명회에 관한 사항 |
| | 5 |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업무 |
| | 6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 |
| | 7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관리 |
| | 8 | 투자유치 홍보 및 광고에 관한 사항 |
| | 9 |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워크숍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산단개발 | 대송산업단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갈사만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
| | 2 | 갈사만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유치 지원 및 관리 |
| | 3 | 갈사만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업무 |
| | 4 | 갈사만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
| | 5 | 해양플랜트종합 시험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 및 관리 |
| | 6 | 갈사만산업단지 보상업무 지원 *단지별 보상업무 추진 |
| | 7 | 공업용수도 관리 |
| | 8 | 대송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
| | 9 |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업무 |
| | 10 |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두우개발 | 두우레저단지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 | 1 | 두우레저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 |
| | 2 | 두우레저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
| | 3 |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업무 지원 |
| | 4 | 두우레저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
| | 5 | 금성농공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
| | 6 | 경제자유구역 내 보상업무 지원 |
| | 7 | 에버딘 관련 사업 |

[별표 2]

##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의2 및 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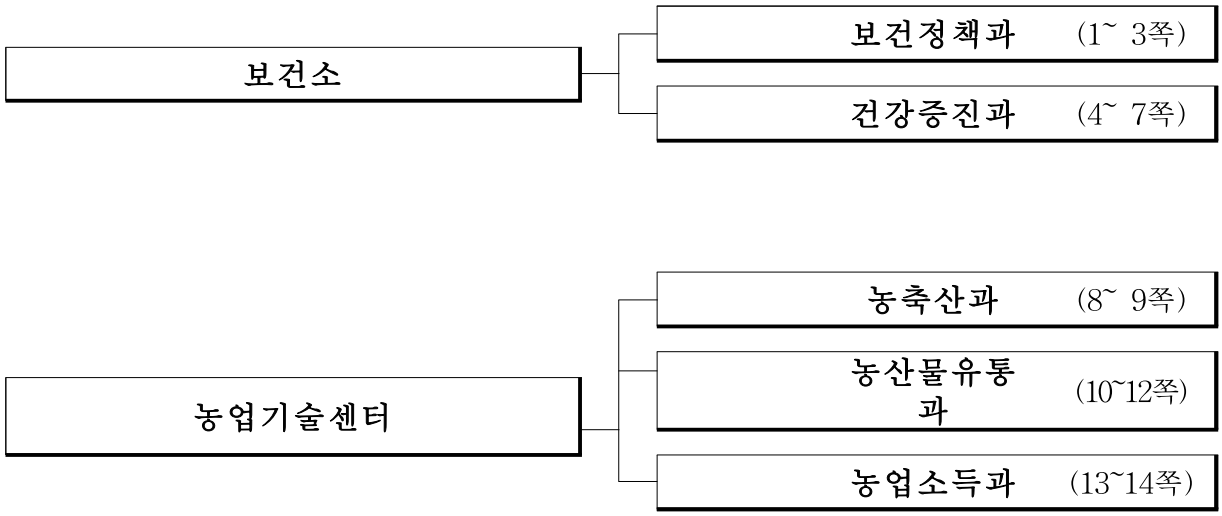

# 1. 보건소

## 보건정책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보건행정 |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 |
| | 1 | 공중보건의사 배치·복무 관리 |
| | 2 |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
| | 3 |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 및 지도 |
| | 4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
| | 5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 | 6 |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
| | 7 |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
| | 8 | 인력관리, 의료진근무지원, 직원복무관리 |
| | 9 | 의료기관 건강진단 등 신고 |
| | 10 | 예산,경리,계약, 세입세출외 현금,세입관리 |
| | 11 | 물품관리, 차량관리, 폐기물관리 |
| | 12 | 지역보건의료시스템관리, 홈페이지 관리 |
| | 13 | 보안 및 인사업무, 의회·감사관련 업무 |
| | 14 |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 |
| | 15 | 소 과 일반서무 및 병원선 운영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감염병 관리 대응 |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 |
| | 1 | 코로나,메르스 등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및 종합계획수립 |
| | 2 | 법정감염병(1,2급) 전반에 관한사항 |
| | 3 | 생활방역관리 전반에 관한사항 및 계획수립 |
| | 4 | 소독업소.소독대상의무시설관리 |
| | 5 | 방역소독사업 및 계획수립 |
| | 6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
| | 7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
| | 8 | 감염병관련 신속.위기대응 및 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 대응) |
| | 9 |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훈련 |
| | 10 | 생물테러 감염병관리 |
| | 11 | 감염병 확산방지대책수립 |
| | 12 | 감염병 역학조사 |
| | 13 | 손실보상 및 치료비 지원 |
| | 14 | 오염지역 해외입국자 관리 |
| | 15 | 질병보건통합시스템관리 |
| | 16 | 급성감염병환자 치료비 지원 |
| | 17 | 질병정보모니터 운영(방역관리자 교육 등) |
| | 18 | 신종감염병관리(환자 및 자가격리자관리, 치료 )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예방접종 |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
| | 1 | 법정감염병(3,4급) 전반에 관한사항 |
| | 2 |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 | 3 | 국가결핵관리사업 |
| | 4 |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
| | 5 |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반에 관한사항 |
| | 6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
| | 7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관리 |
| | 8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 및 보상관련 사항 |
| | 9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 | 10 | 기타 법정.지정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발열성 질환 등) |
| | 11 | 감염병 관리 통계관리 및 유행실태 조사 전반 업무 |
| | 12 | 레지오넬라증 환경수계시설 점검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의약 | 의약에 관한 사항 | |
| | 1 |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허가) 등 |
| | 2 | 약국 개설 및 변경신고 등 |
| | 3 | 의료기관, 약국 등 행정처분 |
| | 4 | 의무 및 약무관리 |
| | 5 | 마약류 관리 |
| | 6 | 보건의료분야 재난관리 |
| | 7 |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
| | 8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구급차) 관리 |
| | 9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 | 10 | 365 안심병동사업 |
| | 11 | 한랭 및 온열질환 관리 |
| | 12 | 의료기기 및 화장품관리 |
| | 13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
| | 14 |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리 |
| | 1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
| | 16 | 저소득층 무료 안경지원사업 |
| | 17 | 충무계획(식품의약품안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안전위생 |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
| | 2 |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
| | 3 |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 | 4 |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
| | 5 |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
| | 6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
| | 7 |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
| | 8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
| | 9 | 소비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
| | 10 | 음식문화개선사업 |
| | 11 |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
| | 12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업무 |
| | 13 | 집단급식소 신고 운영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의료혁신 | 의료혁신에 관한 사항 | |
| | 1 | 공공보건의료 구축 |
| | 2 | 민간의료 유치 및 지원 |
| | 3 | 원격진료 등 스마트케어 시스템 구축 |
| | 4 | 병원선 순회진료 |

# 건강증진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건강증진 |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
| | 1 | 건강증진과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집행 업무 |
| | 2 | 건강증진과 장비 및 시설관리 |
| | 3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 | 4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
| | 5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 | 6 | 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활동,절주, 비만, 영양) |
| | 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 8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9 | 영양플러스사업 |
| | 10 | 영유아 건강검진 및 지원 |
| | 11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 | 12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 13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 1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15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
| | 16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 17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 | 18 | 임산부 양수검사비 지원 |
| | 19 | 국민영양관리사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만성질환 | 만성질환에 관한 사항 | |
| | 1 | 방문건강관리사업 |
| | 2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 | 3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
| | 4 | 금연클리닉 운영 |
| | 5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운영 |
| | 6 | 재가 암 관리사업 |
| | 7 |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
| | 8 | 구강보건사업 |
| | 9 | 어르신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 |
| | 10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 | 11 | 지역사회 건강조사 |
| | 12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정신건강 |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
| | 2 | 중증정신질환 관리 |
| | 3 | 위기대응 및 개입 서비스 제공 |
| | 4 | 자살예방사업 |
| | 5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 | 6 | 성인 정신건강증진사업 |
| | 7 | 우울증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
| | 8 | 응급 및 행정입원관리에 대한 사항 |
| | 9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1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 11 |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
| | 12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 13 |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 | 14 |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뇌질환, 특수질병) |
| | 15 |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
| | 16 | 건강도시 관련 사항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치매안심 | 치매안심에 관한 사항 | |
| | 1 | 치매예방 관리사업 |
| | 2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
| | 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 | 4 |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
| | 5 | 치매조기 검진사업 |
| | 6 |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
| | 7 | 치매가족 지원사업 |
| | 8 | 치매 인식개선사업 |
| | 9 |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
| | 10 |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 | 11 | 치매안심마을 운영 |
| | 12 | 치매상담 및 등록사업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진료 | 진료에 관한 사항 | |
| | 1 | 환자진료(일반,치과,한의과,물리치료)에 관한 업무 |
| | 2 | 민원 제증명 발급 등 민원실 운영 |
| | 3 | 건강검진 업무 |
| | 4 | 각종 병리검사 관리 |
| | 5 |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
| | 6 | 진료비 청구 업무 |
| | 7 | 수입금 관리 |

## 2.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농업정책 |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1 |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 | 2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예산 총괄 |
| | 3 |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
| | 4 |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
| | 5 |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 | 6 | 불법전용농지 단속 등 농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 7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 | 8 |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대장 정비 |
| | 9 |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
| | 10 |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 |
| | 11 | 농어민수당지원 |
| | 12 |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
| | 13 | 세입세출 외 현금 |
| | 14 |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
| | 15 |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농촌자원 | 농업인 육성, 농촌자원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
| | 1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
| | 2 |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
| | 3 |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
| | 4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
| | 5 |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
| | 6 |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
| | 7 | 농촌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 |
| | 8 | 농작업환경개선 지도 |
| | 9 |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
| | 10 |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
| | 11 |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
| | 12 | 향토자원 발굴 및 보급 |
| | 13 |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관리 |
| | 14 |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 | 15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
| | 16 |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관리 지도 |
| | 17 |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
| | 18 |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육성 및 관리 |
| | 19 |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농업 인력 | 농업혁신 및 국내외 농업인력관리 | |
| | 1 | 농업인력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전반 |
| | 2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
| | 3 | 농촌일손돕기 지원 및 각종 인건비지원·프로그램 활성화 |
| | 4 | 청년농업인 경쟁력 및 차세대 농업인 활성화 지원 |
| | 5 | 소규모 농기계 및 차량부착용 리프트 지원 |
| | 6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
| | 7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 취농인턴 지원사업 |
| | 8 | 강소농 육성 지원 |
| | 9 | 농업정보화 및 단체 활성화 |
| | 10 | 농산물 소득조사 |
| | 11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
| | 12 |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
| | 13 |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
| | 14 | 농업인 정보화 촉진사업 |
| | 15 | 미래형 하동 농업농촌 모델 계획 |
| | 16 | 해외 농업인력 유치지원 전반 |

19

| 담당 | 분장 사무 | |
|---|---|---|
| 축산 경영 |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
| | 1 | 한우산업 육성 |
| | 2 | 낙농산업 육성 |
| | 3 | 양계산업 육성 |
| | 4 | 양돈산업 육성 |
| | 5 | 양봉, 토봉산업 육성 |
| | 6 | 기타 가축 육성 |
| | 7 | 축산물 브랜드 육성 |
| | 8 | 축사환경개선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축산 위생 | 가축방역 및 축산위생에 관한 사항 | |
| | 1 |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
| | 2 |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
| | 3 | 공수의 지도 감독 |
| | 4 | 공동방제단 운영 |
| | 5 |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
| | 6 |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
| | 7 | 축산물 위생 전반 |

# 농산물유통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녹차 산업 | 녹차산업 육성·유통지원 및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 |
| | 1 |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
| | 2 | 녹차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 |
| | 3 | 가루녹차 생산 기술지도(차광재배) |
| | 4 | 녹차연구소 지원 관리 |
| | 5 | 차 생산자단체 협의 관리 |
| | 6 | 야생녹차산업특구 지정 관리 |
| | 7 | 하동녹차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관리 등록 |
| | 8 |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지원 |
| | 9 | 하동야생차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
| | 10 |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녹차 기반 |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 |
| | 1 | 농업유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 | 2 | 하동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관리 |
| | 3 |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
| | 4 | 하동녹차 홍보 및 박람회 지원 |
| | 5 | 정금차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보전 관리 |
| | 6 |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운영 |
| | 7 | 농업유산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유통 마케팅 |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 |
| | 1 |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
| | 2 |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
| | 3 |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 및 지도 |
| | 4 |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
| | 5 | 경남 추천상품 관리 |
| | 6 | 농산물 유통안정화 지원 |
| | 7 | 농산물 포장재 통합 관리 및 지원 |
| | 8 | 농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및 지원 |
| | 9 | 지역푸드플랜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 | 10 |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
| | 11 |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
| | 12 | 로컬푸드 단체 지원 및 육성(교육) |
| | 13 | 학교급식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수출 지원 |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 |
| | 1 |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
| | 2 |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
| | 3 |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
| | 4 |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
| | 5 |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
| | 6 |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
| | 7 |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
| | 8 | 수출포장재 지원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농산물 융복합 |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
| | 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
| | 2 |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
| | 3 |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
| | 4 | 농산물융복합 기술개발사업 |
| | 5 | 벤처농업 육성 |
| | 6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 | 7 | 농산물가공창업지원 및 육성 |
| | 8 | 농산물 가공관련 연구회 육성 지원 |
| | 9 |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보급 |
| | 10 | 농산물 가공 소득 활동 지도 |
| | 11 | 농산물가공교육 교육반 운영 |

# 농업소득과장

| 담당 | 분장 사무 | |
|---|---|---|
| 스마트 농업 |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 |
| | 1 |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
| | 2 |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
| | 3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 | 4 |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
| | 5 | 과학영농시설 운영 |
| | 6 |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
| | 7 | 기능성 신소득작목 육성 |
| | 8 | 인공지능 도입 스마트농업 총괄 |
| | 9 | 드론활용 종합계획 수립 |
| | 10 | 드론활용 새로운 시책 개발 및 추진 |
| | 11 | 드론활용 긴급 방제 및 조사료 파종 지원 |
| | 12 | 드론활용 안전관리지도 및 홍보 |
| | 13 | 군민 드론교육 실시 및 농업인 드론전문인력 양성 |
| | 14 | 드론활용 하동군 주요 축제현장·관광지 홍보영상 촬영 |
| | 15 | 드론 장비 관리 및 드론촬영 지원 |

| 담당 | 분장 사무 | |
|---|---|---|
| 농업 지원 |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 |
| | 1 | 양곡 수급관리 |
| | 2 | 공익형 직불제 지원 |
| | 3 | 부농육성사업 |
| | 4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 | 5 | 농업인융자이자보조금지원사업 |
| | 6 |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무상수리반 운영 |
| | 7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관리 |
| | 8 | 농업기계화 촉진 및 현장실습 교육 |
| | 9 | 농업기계화 사업 |
| | 10 |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
| | 11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
| | 12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식량특작 |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 |
| | 1 |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
| | 2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
| | 3 |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
| | 4 |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
| | 5 |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
| | 6 | 토양 등 농업환경 분석 및 기술지도 |
| | 7 |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
| | 8 | 특작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 |
| | 9 | 밭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도 |

| 담당 | 분장 사무 | |
|---|---|---|
| 원예산업 |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 |
| | 1 | 원예산업 종합계획 및 생산 |
| | 2 | 원예작물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
| | 3 |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
| | 4 |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
| | 5 |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
| | 6 | 원예작물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

| 담당 | 분장 사무 | |
|---|---|---|
| 과수 | 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 |
| | 1 | 과수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
| | 2 |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
| | 3 | 과수분야 소득작목 개발 및 신기술 보급지도 |
| | 4 | 과수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
| | 5 |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
| | 6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관리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단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조(직무) ① ---- 담당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조(단장)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
| 제3조의2(국장・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3조의2(국장・과장)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경제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3. ---------- |
| 가. 경제기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가. (현행과 같음) |
| 나. 도시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나. 도시과장 ---------- |
| 다. 건설교통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 다. 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라. 안전총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라. 건설과장 ---------- |
| 마. 해양수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마. 안전교통과장 ---------- |

| | |
|---|---|
| 바. 투자유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만, 바목에도 불구하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투자유치과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유치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 바. (현행 마목과 같음) |
| <신 설> | 사. 투자유치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제8조(하부조직)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8조(하부조직) ① ----------<br>----------<br>----------<br>----------<br>----------<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농촌진흥과장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삭 제> |
| 4. (생 략) | 3. (현행 제4호와 같음)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63 호

##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하동군수”를 “중앙정부, 하동군수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의사담당”을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적용 범위)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4. 중앙정부, 하동군수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 ------- |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⑥ (생 략)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6항----------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⑧・⑨ (생 략) | ⑧・⑨ (현행과 같음) |
| 제6조(회의) ① (생 략) |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 ② ---------- 1명----------의정담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생략)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

| | |
|---|---|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23-138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7. 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3(공유수면)
2. 허가연월일 : 2023. 7. 6.
3. 점·사용의 목적 : 진 · 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052번지 , 48㎡
5. 점·사용의 기간 : 2023.07.06. ~ 2028.07.05.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악양면 악양동로 여태*

하동군 고시 제2023-139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7. 10.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4(공유수면)
2. 허가연월일 : 2023. 7. 10.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준설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청암면 1749-3번지 , 150㎡
5. 점·사용의 기간 : 2023.07.10. ~ 2028.07.17.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청암면 청학로, 청*면사무소

하동군 고시 제 2023 - 140호

# 2023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3. 07. 11.

##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
3. 변경 사유 :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사항 발생
4.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사방댐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6.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변경 조서 1부.
2. 사방지 변경 도면 1부**(군청홈페이지 참조)**. 끝.

# 사방지 변경지정 조서

## 2023년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산지사방)-하동권역

| | | | | | |
|---|---|---|---|---|---|
| 토 지 소유자 | 성 명 | 남*양씨대*군파십*대익*조부후손종중 외 | | | |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234-5, ***동 ****호 (망경동,망경한보아파트) 외 | | | |
| 토 지 소 재 지 | |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산197임 외 | | | |
| 조 사 년 월 일 | | 2023년 2월 일 | | | |
|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 | 2023년 2월 일 | | | |
| 사방지 지정 면적 | 당초 6,162㎡ | 변경 | 6,098㎡ | | |
| 사방지 지정 사유 | 2023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함. | | | | |

# 사방지 지정 내역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지정면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 비고 (사업명) |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당초 | 변경 | 주소 | 성명 | |
| 계 | | | | | 663,014 | 6,162 | 6,098 | | | |
| 하동 | 청암 | 상이 | 산197 | 임 | 88,959 | 269 | 269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234-5, ***동 ****호 (망경동,망경한보아파트) | 남*양씨대*군파십*대익자*부후손종중 | 산지사방(하동청암상이지구) |
| | | | 산198 | 임 | 19,882 | 80 | 80 |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234-5, ***동 ****호 (망경동,망경한보아파트) | 남*양씨대*군파십*대익자*부후손종중 | |
| | | | 산198-1 | 구 | 625 | 35 | 35 | | 국(국토교통부) | |
| | | | 1970 | 구 | 6,286 | 45 | 45 | | 국(국토교통부) | |
| | 옥종 | 위태 | 산98 | 임 | 17,851 | 60 | 60 |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355 성원3차아파트 ***동****호 | 양*순 | 계류보전(하동옥종위태지구) |
| | | | 산112-1 | 도 | 3,531 | 24 | 24 | | 국(국토교통부) | |
| | | | 677-2 | 임 | 393 | 11 | 11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3-3 고현주공아파트 ***-*** | 강*진 | |
| | | | 683-2 | 답 | 1,574 | 13 | 13 | | 김*미 | |
| | | | 678 | 답 | 2,446 | 32 | 7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안길 ** | 강*갑 | |
| | | | 1730-3 | 구거 | 37,616 | 934 | 977 | | 국(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883 | 답 | 50 | 13 | 13 | | 민*목 | |
| | 북천 | 직전 | 산99-5 | 임 | 30,856 | 302 | 302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41번길 18, *동 ***호(달동,현우아파트) | 정*한 | 계류보전(하동북천직전지구) |
| | | | 1510-3 | 철 | 1,891 | 478 | 478 | | 국(국토교통부) | |
| | | | 760 | 답 | 1,078 | 26 | 26 |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 | 정*연 | |
| | | | 산97-2 | 임 | 17,554 | 148 | 148 |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15 성저마을 ***동 ***호 | 김*규 | |
| | | | 751 | 전 | 1,415 | 4 | 4 |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 | 김*선 | |
| | 횡천 | 학 | 산19 | 임 | 10,993 | 30 | 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수영로) | 전*갑 | 계류보전(하동횡천학지구) |
| | | | 10 | 임 | 400 | 64 | 64 |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 | 김*철 | |
| | | | 산20 | 임 | 1,423 | 57 | 57 |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 | 장*섭 | |
| | | | 1149-2 | 구 | 1,568 | 541 | 545 | 하동군 횡천면 학리 ** | 전*석 | |
| | | | 11 | 임 | 86 | 8 | 8 | 하동군 횡천면 학리 | 전*수 | |
| | | | 7-1 | 전 | 731 | 13 | 13 |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 | 김*철 | |
| | | | 1149-4 | 구 | 37 | - | 6 | | 국(건설교통부) | |
| | | | 1148 | 도 | 1,714 | - | 2 | | 국(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고전 | 성평 | 산39-2 | 도 | 2,876 | 5 | 5 | | 국(국토교통부) | 사방댐(하동고전 성평1지구) |
| | | | 산40-1 | 도 | 33,521 | 12 | 12 | | 국(국토교통부) | |
| | | | 산39-3 | 임 | 3,510 | 62 | 91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1 태영아파트 ***동 ***호 | 이*경 | |
| | | | 산40-2 | 도 | 4,959 | 110 | 138 |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 | 이*자 | |
| | | | 산38-4 | 구 | 3,639 | 489 | 489 | | 국(국토교통부) | |
| | | | 산38-2 | 임 | 40,633 | 4 | 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56, *동 ****호(도곡동,타워팰리스아파트) | 정*우 | |
| | | | 산37-1 | 임 | 34,925 | 38 | - |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 하동군금남면진정리*** | 정*석 문*정 | |
| | 고전 | 성평 | 산112-1 | 임 | 147,669 | 615 | 615 | | 하동군 | 사방댐(하동고전 성평2지구) |
| | 옥종 | 두양 | 산26-1 | 구거 | 9,950 | 216 | 216 | | 국(국토교통부) | 사방댐(하동옥종 두양지구) |
| | | | 산12 | 임 | 4,959 | 21 | 2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51, ***동 ****호(명지동, 영어도시퀸덤1차) | 성*기 | |
| | | | 산15-7 | 임 | 3,306 | 127 | 127 |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1063번길 *** | 민*선 | |
| | | | 산26-1 | 임 | 25,488 | 453 | 453 |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 | 당*마*회 | |
| | 옥종 | 회신 | 산61 | 임 | 10,081 | 138 | 138 | 적량면 관리 **-* | 양*옥, 양*애 | 사방댐(하동옥종 회신지구) |
| | | | 산69 | 임 | 22,512 | 280 | 154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6, *동 ***호(대산아파트) | 권*식 | |

| | | | | | | | | | | |
|---|---|---|---|---|---|---|---|---|---|---|
| | | | 산69-1 | 구 | 6,081 | 146 | 146 | | 국(국토교통부) | |
| | | | 산70 | 임 | 18,636 | 44 | 44 |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 | 조*래 | |
| | | | 890-19 | 구 | 41,310 | 215 | 215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주의사항
: 고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성명 및 주소 ** 처리

하동군 고시 제2023 - 141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352-30 외 4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5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7.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276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352-30 | 20230714 |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404-3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반석길 11 | 20230714 | 마을의 생긴 모습이 복치형국의 명지라 하여 꿩이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354-1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91 | 20230714 |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 자여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7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19 | 20230714 |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56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73-15 | 20230714 |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하동군 고시 제2023 - 142호

#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변경)

하동군 고시 제2022-98호로 고시된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7일

하 동 군 수

##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개요

| | 사업명 | 사업유형 | 총사업비(억원) | 사업기간 |
|---|---|---|---|---|
| 개요 및 범위 |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東光)마을 | 주거지원형 | 246.49 | 2021~2024 |
|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0,000.0㎡ |
|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 ▪ 하동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 | | |
| 사업 필요성 | ▪ 마을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여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 SOC공급과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활력 유도 | | | |
| 사업내용 및 효과 | ▪ 주거환경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br>▪ 마중물(4개사업), 부처연계(1개사업), 공기업(1개사업) | | | 상세 3 참조 |
| 재원조달방안 | ▪ 마중물 122.07억, 부처 80억, 공기업 33.52억, 기금 10억, 민간 0.9억 | | | 상세 5 참조 |
|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 ▪ 마중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 | 상세 6 참조 |

**활성화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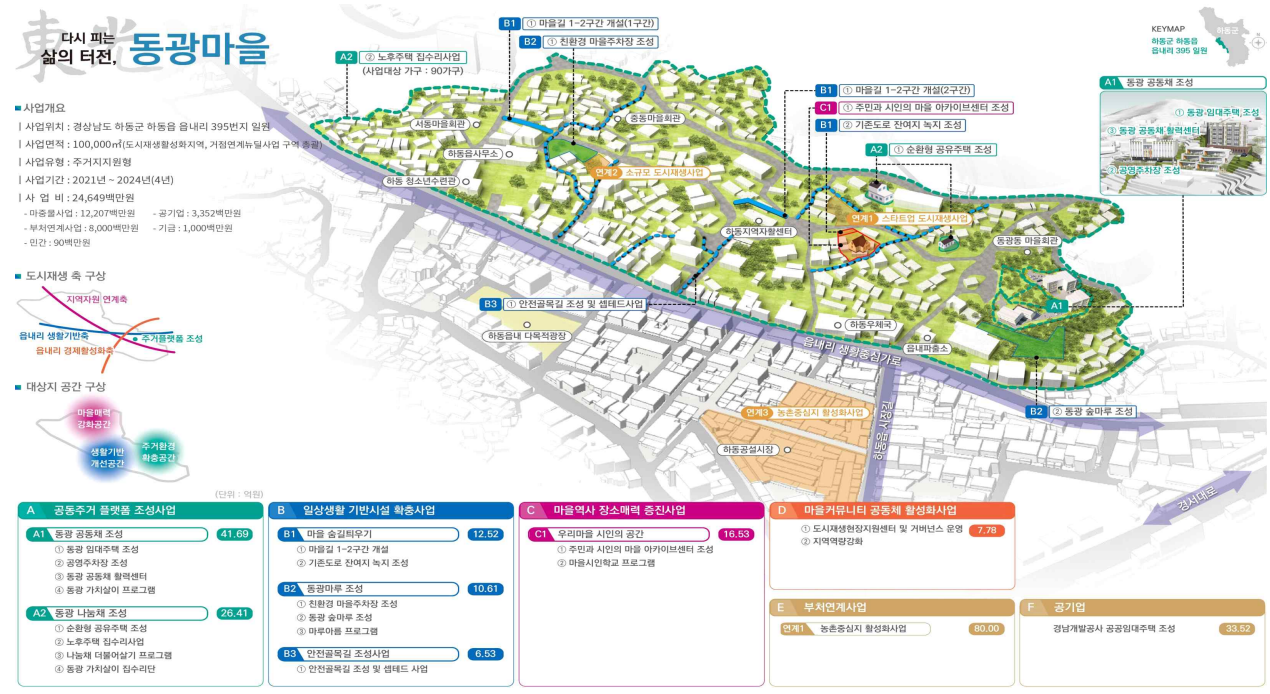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구분 | 사업명 | | 사업비(억원) | | 사업내용 | |
|---|---|---|---|---|---|---|
| **합계** | | | **257.76** | **246.49** | | |
| 마중물 사업 | **소계** | | **기존** | **변경** |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133.34 | 122.07 | | |
| |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 | 동광 공동체 조성 | 41.69 | 41.69 | H/W | 동광 임대주택 조성 |
| | | | | | H/W | 동광 공영주차장 조성 |
| | | | | | H/W | 동광 공동체 활력센터(어울림센터) |
| | | | | | S/W |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 운영 |
| | | 동광 나눔채 조성 | 26.41 | 26.41 | H/W |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 |
| | | | | | H/W |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
| | | | | | S/W | 나눔채 더불어살기 프로그램 |
| | | | | | S/W |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 |
| |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 | 마을숨길 틔우기 | 13.25 | 12.52 | H/W | 마을 1-2구간(자투리숨터) |
| | | | | | H/W | ~~산복1길 안전휀스 조성~~**(사업삭제)** |
| | | | | | H/W | 기존 도로 잔여지 녹지 조성 |
| | | | | | S/W | ~~동광마을 마을지킴단~~**(사업삭제)** |
| | | 동광마루조성 | 16.85 | 10.61 | H/W |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사업비 조정)** |
| | | | | | H/W | 동광숲마루 조성사업**(사업비 조정)** |
| | | | | | S/W | 마루아름(플리마켓)프로그램**(사업비 조정)** |
| | |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 10.83 | 6.53 | H/W | 골목환경정비 및 셉테드 사업**(사업 조정)** |
| | | | | | H/W | 노인안전보행길 조성**(사업 조정)** |
| | | | | | S/W | ~~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사업삭제)** |
| |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 |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 16.53 | 16.53 | H/W | 주민과 시인의 마을 아카이브 센터 |
| | | | | | S/W | 마을시인학교 |
| |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 | | 7.78 | 7.78 | S/W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
| | | | | | S/W | 지역역량강화 |
| 부처 연계사업 | **소계** | | | **80.00** | | |
|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 | 80.00 | · 테마와 경쟁력 있는 농촌발전 거점육성<br>· 지역간 소통을 위한 시설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 |
| 공기업 사업 | **소계** | | | **33.52** | | |
| | 공공임대주택 조성 | | | 33.52 | · 공공임대주택 22호 공급 | |
| *기금 | **소계** | | | **10** | | |
| | 공공임대주택 조성 | | | 10 | · 동광활력센터 조성 지원 | |
| **민간 투자 | **소계** | | | **0.9** | | |
| | 노후주택 집수리 자부담 | | | 0.9 | ·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 |

##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 구분 | 현황 | 공급 및 확충 계획 | 현황 대비 |
|---|---|---|---|
| 공공임대주택 공급 | 0호<br>(0세대/355세대) | 22호 | 6.29%<br>(22세대/350세대) |
| 공영주차장 공급 | 0면 | 70면 | - |
| 빈집 정비 | 11호 | 3호 | 28.00% |
| 불량도로 정비 | 1,817m | 1,817m<br>(마을길개설+펜스설치+골목정비) | 100.00% |
| 지역공동체 발굴 (신규)건수 | 2건 | 5건 | 250.00% |
| 노후주택 집수리 | - | 90호 | - |

##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

(단위: 억원, ㎡)

| 기반시설종류 | 단위사업명 | 사업비 | 위치 | 면적(규모) | 사업내용 | 비고 |
|---|---|---|---|---|---|---|
|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 동광공동체 조성 | 35.30 | 읍내리 395 외 8번지 | 공동이용시설 A=580㎡<br>(마을회관, 어울림센터 등)<br>공영주차장 A=300㎡ | 동광임대주택 및 생활SOC 조성 | 임대주택 22호 / 공기업 참여 |
| 도로, 녹지 | 마을 숨길 틔우기 | 12.52 | 읍내리 450-5 외 7필지 | 도로개설 A=560㎡,<br>녹지공간 A=123㎡ | 도로환경 개선 | |
| 주차장, 녹지 | 동광마루 조성 | 10.61 | 읍내리 1220 외 10필지 | 주차장 A=661㎡<br>동광숲마루 A=1,064㎡ | 마을 주차장 및 녹지 조성 | 사업비 변경 |
| 공동이용시설 |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 16.02 | 읍내리 456-1 외 2필지 | 아카이브 센터 A=544㎡ | 아카이브 센터 조성 | |

##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기존]

| 구 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계 | 마중물 | | 부처연계 | | 자체 지방비 | 공기업 | 기금 | 민간 | 사업기간 |
|---|---|---|---|---|---|---|---|---|---|---|---|---|
| | | |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 | | |
| **총 합계** | | | **257.76** | **80.00** | **53.34** | **56.00** | **24.00** | **-** | **33.52** | **10.00** | **0.90** | |
| A~D 마중물 사업 | **합 계** | | **133.34** | **80.00** | **53.34** | **-** | **-** | **-** | **-** | **10.00** | **0.90** | **'21~24** |
| | A 공동주거플랫폼 조성사업 | 공동체 | 41.69 | 25.01 | 16.68 | - | - | - | - | - | - | |
| | | 나눔채 | 26.41 | 15.84 | 10.57 | - | - | - | - | - | - | |
| | B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 마을숨길 | 13.25 | 8.95 | 4.30 | - | - | - | - | - | - | |
| | | 동광마루 | 16.85 | 11.11 | 5.74 | - | - | - | - | - | - | |
| | | 안전골목길 | 10.83 | 7.19 | 3.64 | - | - | - | - | - | - | |
| | C 마을역사 장소 매력 증진사업 | 시인공간 | 16.53 | 9.92 | 6.61 | - | - | - | - | - | - | |
| | D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 | 7.78 | 1.98 | 5.80 | - | - | - | - | - | - | |
| E 부처연계 사업 | **합 계** | | **80.00** | **-** | **-** | **56.00** | **24.00** | **-** | **-** | **-** | **-** | **'16~20** |
|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부) | | 80.00 | - | - | 56.00 | 24.00 | - | - | - | - | |
| F 공기업 | **합 계** | | **33.52** | **-** | **-** | **-** | **-** | **-** | **33.52** | **-** | **-** | **'21~24** |
| | 경남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조성 | | 33.52 | - | - | - | - | - | 33.52 | - | - | |
| *G 기금 | **합 계** | | **10.00** | **-** | **-** | **-** | **-** | **-** | **-** | **10.00** | **-** | **'21~24** |
| | 동광활력센터 조성 지원 | | 10.00 | - | - | - | - | - | - | 10.00 | - | |
| **H 민간 | **합 계** | | **0.9** | **-** | **-** | **-** | **-** | **-** | **-** | **-** | **0.9** | **'23~24** |
| |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 | 0.9 | - | - | - | - | - | - | - | 0.9 | |

[변경]

| 구 분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계 | 마중물 | | 부처연계 | | 자체 지방비 | 공기업 | 기금 | 민간 | 사업기간 |
|---|---|---|---|---|---|---|---|---|---|---|---|---|
| | | |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 | | |
| 총 합계 | | | 246.49 | 80.00 | 53.34 | 56.00 | 24.00 | - | 33.52 | 10.00 | 0.90 | |
| A~D 마중물 사업 | 합 계 | | 122.07 | 73.24 | 48.83 | - | - | - | - | 10.00 | 0.90 | '21~24 |
| | A 공동주거플랫폼 조성사업 | 공동채 | 41.69 | 25.01 | 16.68 | - | - | - | - | 10.00 | - | |
| | | 나눔채 | 26.41 | 15.84 | 10.57 | - | - | - | - | - | - | |
| | B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 마을숨길 | 12.52 | 8.51 | 4.01 | - | - | - | - | - | - | |
| | | 동광마루 | 10.61 | 7.37 | 3.24 | - | - | - | - | - | - | |
| | | 안전골목길 | 6.53 | 4.61 | 1.92 | - | - | - | - | - | - | |
| | C 마을역사 장소 매력 증진사업 | 시인공간 | 16.53 | 9.92 | 6.61 | - | - | - | - | - | - | |
| | D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 | 7.78 | 1.98 | 5.80 | - | - | - | - | - | - | |
| E 부처연계 사업 | 합 계 | | 80.00 | - | - | 56.00 | 24.00 | - | - | - | - | '16~20 |
|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부) | | 80.00 | - | - | 56.00 | 24.00 | - | - | - | - | |
| F 공기업 | 합 계 | | 33.52 | - | - | - | - | - | 33.52 | - | - | '21~24 |
| | 경남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조성 | | 33.52 | - | - | - | - | - | 33.52 | - | - | |
| **G 민간 | 합 계 | | 0.9 | - | - | - | - | - | - | - | 0.9 | '23~24 |
| |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 | 0.9 | - | - | - | - | - | - | - | 0.9 | |

## 5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결정(변경) 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 변경 전 (최종고시) | 예산 | 변경 후 (금회 변경) | 예산 | 예산 증감 | 변경/보완 사유 | 비고 |
|---|---|---|---|---|---|---|---|
| 계 | - | 13,334 | - | 12,207 | -1,127 | | |
| 변경 | **B1. 마을 숨길 틔우기** | 1,325 | **B1. 마을 숨길 틔우기** | 1,252 | -73 |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 _산복1길 안전휀스 정비]**<br>· 디자인 펜스 설치하여 안전 확보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해당 지역은 기존 펜스(가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업삭제<br>**[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 _동광마을지킴단]**<br>·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유도하고 위험 및 정비 필요 시설에 대한 관리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사업삭제 | 사업 삭제 |
| | (1) 마을길 1-2구간 개설(H/W)<br>· 하동읍 읍내리 450-5번지 외 5필지<br>· 규모 560㎡ | 1,118 | (1) 마을길 1-2구간 개설(H/W)<br>· 하동읍 읍내리 450-5번지 외 5필지<br>· 규모 560㎡ | 1,118 | - | | |
| | (2) 산복1길 안전휀스 정비(H/W)<br>· 규모 213m | 37 | ~~(2) 산복1길 안전휀스 정비(H/W)~~<br>· 사업삭제 | - | -37 | | |
| | (3) 기존도로 잔여지 녹지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458번지 외 1필지<br>· 규모 123㎡ | 134 | (3) 기존도로 잔여지 녹지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458번지 외 1필지<br>· 규모 123㎡ | 134 | - | | |
| | (4) 동광마을지킴단(S/W)<br>· 동광마을지킴단 | 36 | ~~(4) 동광마을지킴단(S/W)~~<br>· 사업삭제 | - | -36 | | |
| | **B2. 동광마루 조성** | 1,685 | **B2. 동광마루 조성** | 1,061 | -624 |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_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br>· 당초 경사지형을 완만히 하는 절토식 건축시공으로 기준단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나, 계획(안) 변경되며 구조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사업단가 재책정함에 따라 공사비 절감 | 사업비 조정 |
| | (1)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H/W)(마을쉼터)<br>· 하동읍 읍내리 1222-1번지 외 4필지<br>· 규모 661㎡ | 1,019 | (1)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H/W)(마을쉼터)<br>· 하동읍 읍내리 1222-1번지 외 4필지<br>· 규모 661㎡ | 638 | -381 | | |

| | | | | | | | |
|---|---|---|---|---|---|---|---|
| | (2) 동광 숲마루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382-3번지 외 3필지<br>· 규모 1,064㎡ | 616 | (2) 동광 숲마루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382-3번지 외 3필지<br>· 규모 1,064㎡ | 390 | -226 |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_동광 숲마루 조성]**<br>· 기준단가는 유지하되 가용할 수 있는 시설면적 산출하여 공사비 책정함에 따라 사업비 감액 | |
| | (3) 마루아름 프로그램(S/W)<br>· 마루아름 프로그램 | 50 | (3) 마루아름 프로그램(S/W)<br>· 마루아름 프로그램 | 33 | -17 |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_마루아름 프로그램]**<br>· 기존 프로그램 운영단가 조정을 통한 사업비 감액 | |
| | **B3.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 1,083 | **B3.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 653 | -430 |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 사업통합_안전골목길 조성 및 셉테드사업]**<br>· 골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므로 사업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사업비 감소<br>**[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삭제_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br>·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마을 골목길 가꾸기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삭제 | 사업삭제, 사업통합, 사업비 조정 |
| | (1) 골목길환경정비 및 셉테드 사업(H/W) | 314 | (1) 안전골목길 조성 및 셉테드 사업(H/W)<br>· 골목길 포장 및 정비, LED 보안등, 반사경, 스마트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 653 | -293 | | |
| | (2) 노인안전보행길 조성(H/W)<br>· 안전을 위한 바닥 난간, 담장 정비 | 632 | | | | | |
| | | 137 | | - | -137 | | |
| | (3) 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S/W)<br>· 육성 및 운영 | | ~~(2) 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S/W)~~<br>· 사업삭제 | | | | |
| 유지 | **A1. 동광 공동체 조성** | 4,169 | **A1. 동광 공동체 조성** | 4,169 | - | - | 변경 없음 |
| | (1) 동광 임대주택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외 17필지<br>· 대지면적 3,317㎡<br>· 공공임대주택 22세대, 커뮤니티 1개소 | 1,617 | (1) 동광 임대주택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395번지 외 17필지<br>· 대지면적 3,317㎡<br>· 공공임대주택 22세대, 커뮤니티 1개소 | 1,617 | - | | |
| |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br>· 주차대수 13대 | 424 |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br>· 주차대수 13대 | 424 | - | | |
| | (3) 동광 공동체 활력센터 (어울림센터)(H/W)<br>· 연면적 651㎡<br>· 부설주차장 19대 | 2,106 | (3) 동광 공동체 활력센터 (어울림센터)(H/W)<br>· 연면적 651㎡<br>· 부설주차장 19대 | 2,106 | - | | |
| | (4)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S/W)<br>·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 | 22 | (4)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S/W)<br>·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 | 22 | - | | |
| | **A2. 동광 나눔채 조성** | 2,641 | **A2. 동광 나눔채 조성** | 2,641 | - | - | 변경 없음 |
| | (1)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462-5번지 외 2필지<br>· 순환형 공유주택 2동(5호) | 1,569 | (1)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462-5번지 외 2필지<br>· 순환형 공유주택 2동(5호) | 1,569 | - | | |
| | (2)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H/W)<br>· 집수리 90호 | 900 | (2)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H/W)<br>· 집수리 90호 | 900 | - | | |
| | (3)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S/W) | 22 | (3)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S/W) | 22 | - | | |

| | | | | | | | |
|---|---|---|---|---|---|---|---|
| | ·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br><br>(4)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S/W)<br>·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 | 150 | · 나눔채 더불어 살기 프로그램<br><br>(4)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S/W)<br>·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 | 150 | - | | |
| | **C1.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아카이브 조성)** | 1,653 | **C1.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아카이브 조성)** | 1,653 | - | - | 변경 없음 |
| | (1) 주민과 시인의 마을 아카이브 센터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456-1번지 외 2필지<br>· 대지면적 572㎡<br>· 시설면적 544㎡<br><br>(2)마을시인학교 프로그램(S/W)<br>· 마을시인학교 | 1,602<br><br><br><br><br>51 | (1) 주민과 시인의 마을 아카이브 센터 조성(H/W)<br>· 하동읍 읍내리 456-1번지 외 2필지<br>· 대지면적 572㎡<br>· 시설면적 544㎡<br><br>(2)마을시인학교 프로그램(S/W)<br>· 마을시인학교 | 1,602<br><br><br><br><br>51 | -<br><br><br><br><br>- | | |
| | **D1.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 778 | **D1.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 778 | - | - | 변경 없음 |
| |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br><br>(2) 지역역량강화 | 448<br><br>330 |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br><br>(2) 지역역량강화 | 448<br><br>330 | -<br><br>- | | |

## 6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 | 기투입 | 2021년 | 2022년 | 2023년 이후 | 계 |
|---|---|---|---|---|---|---|
| 마중물 사업 | 국비 | - | 20.63 | 26.13 | 26.48 | 73.24 |
| | 지방비 | - | 13.76 | 17.42 | 17.65 | 48.83 |
| 부처연계 | | 80.0 | - | - | - | 80.00 |
| 공기업 | | - | - | 16.76 | 16.76 | 33.52 |
| 기금 | | - | - | | 10 | 10 |
| 민간 | | - | - | | 0.9 | 0.9 |
| **사업비 합계** | | **80.0** | **34.39** | **60.31** | **71.79** | **246.49** |

## 7 기타사항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하동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부서(하동군 군청로 23)

○ 관련 서류 : 열람장소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도시재생부서(☎055-880-2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하동군 고시 제2023-143호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7. 2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4(공유수면)
2. 허가연월일 : 2023. 7. 21.
3. 점·사용의 목적 : 공유수면 점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149번지 , 22㎡
5. 점·사용의 기간 : 2023.06.20. ~ 2028.06.19.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김용순

하동군 고시 제2023 - 145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7일

하 동 군 수

1. 허 가 번 호 : 2023-03
2. 사 업 목 적 : 농지조성(맷돌호박)
3.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산76-10번지(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산76-16번지(임)
4. 사업시행면적: 방화리 산76-10번지 10,093㎡ 중 2,999㎡
   방화리 산76-16번지 7,040㎡ 중 1,849㎡
5. 총 사 업 비 : 금242,800천원
6. 사 업 기 간 : 2023. 7. 27. ~ 2025. 7. 26.
7. 사 업 의 효 과: 개간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8. 사 업 시 행 자: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양달로 69, 205-***, 최숙*

하동군 공고 제2023-1023호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제안 이유 : 「지역보건법」이 2023. 3. 28.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보건소 보건정책과, 전화 055-880-6615, FAX 055-880-6620, e-mail yaong201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최초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등)은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 1,000 | 2,000 | 3,000 |
|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 100 | 200 | 300 |
|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 100 | 200 | 300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br>----------<br>----------. |

하동군 공고 제2023-1024호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및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을 명문화한 일명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라 연령을 규정한 하동군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만' 표현 삭제 및 개별법에 따른 연령 변경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055-880-2973, FAX 055-880-2019, ibche@korea.kr 으로 **【별지 】**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2조(「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4.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내용란 중 “만 6세미만 취학전 까지”를 “6세 미만까지”로 한다.

별표1 중 5.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내용란 중 “만 6세미만 취학전 까지”를 “6세 미만까지”로 한다.

별표3 중 결혼장려금 지원대상란 중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을 “부부 모두 50세 미만인 경우 적용”으로 한다.

제3조(「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차상위

계측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제7조(「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12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12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8조(「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9조(「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7세”를 “6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별표의 구분란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하고,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11조(「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제12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별표 구분란 중 “8세 이상 13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

제12조(「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3조(「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35세”를 “35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청년”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br>2. ~ 5. (생 략) | 제2조(정의) ----------.<br>1. ---------- 19세 이상 45세 이하----------.<br>2. ~ 5.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1]<br>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br>(제3조제2항 관련)<br>세부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br>4. 다둥이 안전보험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br>5. 영유아 양육수당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br>[별표 3] | [별표1]<br>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br>(제3조제2항 관련)<br>세부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br>4. 다둥이 안전보험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6세미만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br>5. 영유아 양육수당 /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 만 6세미만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br>[별표 3] |

##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 세부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br>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br>-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br>-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br>(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br>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


##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 세부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결혼장려금 |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br>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br>-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br>- 부부 모두 50세 미만인 경우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 -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br>(단,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br>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


##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 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br>1. ~ 3. (생 략)<br>② (생 략)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19세 ---------- ---------- ----------. ---------- ---------- ---------- ----------.<br>1. ~ 3.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 략)<br>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br>3.·4. (생 략) | 제2조(정의) ----------.<br>1. (현행과 같음)<br>2. ---------- 65세 ----------.<br>3.·4.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거동불편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br>2.·3. (생 략) | 제3조(정의) ----------.<br>1. ---------- 65세 ----------.<br>2.·3.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돌봄 아동”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br>2. ~ 4. (생 략) | 제2조(정의) ----------.<br>1. ---------- 6세 이상 12세 이하 ----------.<br>2. ~ 4.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br>가.·나. (생 략)<br>2.·3. (생 략) | 제2조(정의) ----------.<br>1. ---------- 12세 미만---------- 12세 이상 19세 미만----------.<br>가.·나. (현행과 같음)<br>2.·3.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 략)<br>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1. ~ 4. (생 략)<br>5. 청년위원(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br>6. (생 략)<br>③·④ (생 략)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5. ---------- 19세 이상 45세 이하 ----------<br>6. (현행과 같음)<br>③·④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관람료) ①·② (생 략)<br>③ 다음 각호의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br>1.·2. (생 략)<br>3.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자<br>4. ~ 6. (생 략)<br>④ (생 략) | 제6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1.·2. (현행과 같음)<br>3. ---------- 65세 ----------<br>4. ~ 6. (현행과 같음)<br>④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및 7세 이하 어린이 | 2. ---------- 6세 ---------- |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
| 1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 11. ---------- 24세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 제11조(관람의 금지)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삭 제 | |
|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미만의 어린이 | 3. ---------- 6세 ----------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별표] | [별표] |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요 금 | | | |
|---|---|---|---|---|
| | 개별권 | | 통합권 | |
|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 600 | 400 | 1,400 | 800 |
|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 800 | 600 | 2,000 | 1,400 |
|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 1,000 | 800 | 2,600 | 2,000 |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과학관 관람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요 금 | | | |
|---|---|---|---|---|
| | 개별권 | | 통합권 | |
|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개인 | 단체 (20명 이상) |
|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 600 | 400 | 1,400 | 800 |
|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 800 | 600 | 2,000 | 1,400 |
|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 | 1,000 | 800 | 2,600 | 2,000 |

※ 개별권 : 지리산생태과학관을 관람하는 경우

※ 통합권 : 지리산생태과학관과 최참판댁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관람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5. ---------- 7세 이상 12세 이하----------. |
| 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 6. ----------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학생, 고등학생----------.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8. “어른”란 20세 이상 64세 이하 | 8. ------ 19세 ---------- |

의 사람으로서 제6호, 제7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생 략)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1. (생 략)

1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3. (생 략)

[별표]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요 금 | | | |
|---|---|---|---|---|
| | 개별권 | | 통합권 | |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어린이(8세 이상 13세 이하) | 1,000 | 500 | 1,400 | 800 |
| 청소년(14세 이상 19세 이하)<br>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 1,500 | 1,000 | 2,000 | 1,400 |
| 어른(20세 이상 64세 이하) | 2,000 | 1,500 | 2,600 | 2,000 |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

9.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의 면제)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24세 ----------

----------

13. (현행과 같음)

[별표]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요 금 | | | |
|---|---|---|---|---|
| | 개별권 | | 통합권 | |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 1,000 | 500 | 1,400 | 800 |
|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br>군인(하사관 이하 군인) | 1,500 | 1,000 | 2,000 | 1,400 |
| 어른(19세 이상 64세 이하) | 2,000 | 1,500 | 2,600 | 2,000 |

※ 개별권 : 최참판댁을 입장하는 경우

※ 통합권 : 최참판댁과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경우

※ 입장료 50% 감경 :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단, 단체는 미적용)

- 남중권 지역 :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br>1.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환자 중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br>2. ~ 9. (생 략)<br>② (생 략) |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br>1. ---------- 65세 ----------<br>2. ~ 9.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 략)<br>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br>3. (생 략) | 제2조(용어의 정의) ----------.<br>1. (현행과 같음)<br>2. ---------- 35세 ----------.<br>3. (현행과 같음) |

# 관 련 법 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23-1026호

#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만 나이 통일법’시행**(‘23. 6. 28.)에 따라 연령을 규정한 하동군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을 일부개정하여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만’ 표현 삭제 및 개별법에 따른 연령 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하동군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055-880-2973, FAX 055-880-2019, ibche@korea.kr 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 제3조(감경대상) ① ----------<br>----------<br>----------<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만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2. 65세 ----------<br>---------- 19세 ----------<br>--------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관 련 법 령

##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23-1037호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현재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 금액 삭제(안 제4조)

나. 국가보훈부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가족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 전화 : 055-880-2344, FAX : 055-880-2349

○ 이메일 : ji2289@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전몰군경유족 : 월 10만원”을 “전몰군경유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배우자 : 월 5만원”을 “배우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만원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br>----------<br>----------<br>-----. ----- 국가보훈부 장관-<br>----------<br>----------<br>----------<br>----------<br>----------<br>---------. |
|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br>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br>가. 참전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유족 : 월 10만원<br>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5만원<br>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br>3. (생 략) | 제4조(지원사업) ----------<br>----------<br>----------<br>----------<br>----------.<br>1. ----------<br>가. ---------- 전몰군경유족<br>나. ---------- 배우자<br>2. ----------<br>-------- 지급<br>3. (현행과 같음) |

# 관 련 법 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1038호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현재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예산 범위내 지급 근거 마련, 지급 금액 삭제(안 제8조)

나. 국가보훈부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가족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가족정책과

○ 전화 : 055-880-2344, FAX : 055-880-2349

○ 이메일 : ji2289@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로 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 ---------- ---------- 국가보훈부 장관---------- ----------. |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 4.----------. ---------- 국가보훈부---------- ----.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서식】

# 보훈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 | | | |
|---|---|---|---|
| 보훈대상자 구분 | | 등록번호 | |
| 보훈대상자 | | 생 년 월 일 | (남/여) |
| 수 진 자 | | 생 년 월 일 | (남/여) |
| 의료급여기관 | | 진 료 기 간 | |

## 진료비 지급 신청

| 총진료비 | 의료보험 | 본인부담액 | 신청금액 |
|---|---|---|---|
| | | | |

## 진료비 지급 구좌

| 거래 금융기관명 | 예금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 | |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청구인 주소 :

성명 : [수진자의 ,(남/여)]

하동군수 귀하

제출서류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 1

* 신청금액이 소액일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

# 관 련 법 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

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2. 2. 17., 2015. 12. 22.>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

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22.>

하동군 공고 제2023-1041호

#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 제안 이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한 지역 정체성과 품격 제고를 위함

3. 주요 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위원회 설치(안 제6조~12조)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안 제19조)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도시건축과, 전화 880-2138, FAX 880-2109, e-mail bingo4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과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회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자문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

③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경관적 요소와 함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하동군 경관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경관 조례」제30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설치 완료 후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2조 및 18조 관련)

## 1. 다음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분 류 | 종 류 |
|---|---|
| 대중교통시설물 |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
| 보행안전시설물 |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
| 편의시설물 |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
| 공급시설물 |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
| 녹지시설물 |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
| 안내시설물 | 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 도로시설물 |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
| 도로 부속시설물 |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
|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
| 임시시설물 |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

## 2. 다음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분 류 | 종 류 |
|---|---|
|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 |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

3. 다음 시설물 및 공간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분 류 | 종 류 |
|---|---|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
| 휴양공간 |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
| 광장 |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

4. 다음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분 류 | 종 류 |
|---|---|
| 공공청사 |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
| 문화·복지시설 |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
| 교통시설 |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
| 환경시설 |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

5. 다음의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분 류 | 종 류 |
|---|---|
| 안전시설물 |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
| 위생시설물 |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
| 편의시설물 |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
| 관광용품 |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

6. 다음사항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분 류 | 종 류 |
|---|---|
| 정보디자인 |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
| 브랜드 등 |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별지 서식]

#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

| | | | | |
|---|---|---|---|---|
| 사 업 명 | | | 공공디자인 분류 | |
| 신청부서(기관) | | | 담 당 자 | TEL |
| 사 업 기 간 | | | | |
| 위 치 | | | | |
| 사 업 개 요 | 총 사 업 비 | | 공 사 비 | |
| | 설계발주방법 | | 설 계 비 | |
| | 예 시<br>1.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Om / 시설물현황 : 휴지통O개, 펜스Om, 볼라드O개)<br>2. 시설물 설치공사(높이Om, 수량Om, 재질, 색상 등 기재)<br>※ 시설물의 설치가 각종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br>3. 공공건축물(지하O층, 지상O층, 연면적Om², 건물용도) 등 | | | |
| 재 심 의 | 당초심의내용반영사항 | | | |
| | 재심의사유 | | | |
| 설 계 자 | 사무소명 | | 사무실주소 | |
| | 성 명 | | 연 락 처 | TEL<br>H·P |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하동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부서(기관), 담당자, 연락처, 설계자 관련사항(사무소명, 사무실주소,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보존기한을 따름

○ 동의거부권리 안내 : 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집 ·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하동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붙 임 서 류 | - 첨부서류 : 인쇄물 20부 내외(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및 CD 1부(PPT, PDF변환파일 포함)<br>- 첨부내용 :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위치도, 주변현황,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br>2. 세부 디자인 계획 및 시안(기본도면, 콘셉트, 시뮬레이션, 색채계획 등)<br>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등) |

210㎜×297㎜(백상지 80g/㎡)

하동군 공고 제2023 - 1052호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8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 해제하기 위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3. 7. 18. ~ 8. 7.(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3. 7. 18. ~ 8. 7.(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 저수지명 | 위 치 | 규 모 | | | 관리자 | 해제사유 | 비고 |
|---|---|---|---|---|---|---|---|
| | | 유역면적(ha) | 유효저수량(천㎥) | 제당높이(m) | | | |
| 삼박골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51-2 | 30.0 | 10.0 | 5.0 | 하동군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 |
| 우동 |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32 | 15.0 | 8.0 | 6.0 | 하동군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 |

##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남 하동군 읍내리 군청로 23 건설교통과
- 전 화 : 055) 880-2514
- 팩 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 | | |
|---|---|---|---|---|
| 공 고 명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br>(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저 수 지 명 | | | | |
| 검토의견<br>(의견제출내용) | | | |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1013호

#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1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 소하천명 | 사업 개요 | | | | | | | | | 비고 |
|---|---|---|---|---|---|---|---|---|---|---|
| | 공사명 | 공사 위치 | | 사업량(m) | | | 공사기간 | | 공사 목적 | |
| | | 시작하는 지점 | 끝나는 지점 | 축제(築堤) | 호안(護岸) | 기타 | 착공 | 준공 | | |
| 율동천, 고동골천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 하동읍 두곡리 772-3 | 하동읍 두곡리 756 | - | -식생블럭 설치 L=196m -전석쌓기 L=221.5m | -고지배수로 L=690m -도로이설 L=260.0m -수문펌프 1식 -부대공 1식 등 | 2022.3 | 2023.12 |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 |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붙임조서 참조

나. 물 건 : 붙임조서 참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하며 물건조서의 경우 중앙 일간신문 공고 생략**

##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년 7월 11일 ~ 7월 26일

**※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보상금 지급 :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조치)

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보상금 산정→보상협의→소유권 이전후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055-880-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유지)

(사 유 지)

| 순번 | 시,군 | 읍,면,구 | 동,리 | 분필전 지번 | 분필후 지번 | 지목 | 전체 면적 ($m^2$) | 편입면적 ($m^2$) | 소 유 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 내용 | |
| 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2-3 | 분필 예정 | 도로 | 135 | 75 | 장*선 | 하동군 읍내동 | | | | |
| 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8-1 | 분필 예정 | 임야 | 1,686 | 24 | 순흥안씨** 공파 광양**종중 | 전남 광양군 다압면 도사리 | | | | 종중 대표 안종열 |
| 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7 | 736-10 | 답 | 2,075 | 807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근저당권 | |
| 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7 | 736-11 | 답 | 2,075 | 673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근저당권 | |
| 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0-1 | 760-5 | 답 | 1,871 | 572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근저당권 | |
| 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1 | | 답 | 393 | 393 | 하동군 | | | | | |
| 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1 | 산56-5 | 임야 | 4,132 | 43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 | | |
| 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1 | 산56-6 | 임야 | 4,132 | 1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 | | |
| 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3 | 산56-7 | 도로 | 295 | 92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 | | |
| 1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2 | | 창고 용지 | 549 | 549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국민 은행 |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진주종합금융센터) | 근저당권 | |
| 1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5 | | 구거 | 327 | 327 | 경상남도 | | | | | |
| 1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3 | | 구거 | 512 | 512 | 하동군 | | | | | |
| 1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 | 757-7 | 잡종지 | 11,363 | 606 | 경상남도 | | | | | |
| 1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 | 757-8 | 잡종지 | 11,363 | 214 | 경상남도 | | | | | |
| 1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2 | 752-1 | 답 | 1,256 | 172 | 장*엽(1/2)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하동농업협동조합 ㈜경남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 | 로642(석전동)(하동지점) | | |
| 1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2 | 752-1 | 답 | 1,256 | 172 | 황*성(1/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 하동농업협동조합 ㈜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 |
| 1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3 | | 답 | 929 | 929 | 하동군 | | | | | |
| 1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 | | 잡종지 | 998 | 998 | 남*철 |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 악양농업협동조합 |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88 | 근저당권 ,지상권 | |
| 1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1 | 분필 예정 | 임야 | 542 | 41 | 하*농*개*조합 | 하동읍 읍내동 | | | | |
| 2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1 | | 답 | 13 | 13 | 윤*선(亡) | 하동읍 읍내동 | | | | |
| 2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1 | | 전 | 69 | 69 | 하동군 | | | | | |
| 2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2 | | 답 | 83 | 83 | 조*동(亡) | 하동읍 읍내동 | | | | |
| 23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1 | | 제방 | 145 | 145 | 김*윤 | 하동읍 두곡리 | | | | |
| 24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2 | 1-4 | 답 | 311 | 118 | 김*윤 | 하동읍 두곡리 | | | | |
| 25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3 | | 구거 | 595 | 595 | 김*윤 | 하동읍 두곡리 | | | | |
| 26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59-1 | 59-10 | 답 | 1,955 | 189 | 이*례 | 하동군 하동읍 중앙4길 | | | | |
| 27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3 | 204-4 | 제방 | 460 | 363 | 조*동(亡) | 하동읍 읍내동 | | | | |
| 2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3-2 | 203-4 | 전 | 383 | 243 | 하동군 | | | | | |
| 2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4 | 202-4 | 제방 | 194 | 84 | 하동군 | | | | | |
| 3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14 | 202-14 | 제방 | 297 | 195 | 하동군 | | | | | |
| 3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4 | | 하천 | 537 | 537 | 김*인(亡)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 | | |
| 3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2 | | 하천 | 1,093 | 1093 | 김*인(亡)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 | | |
| 3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 | 738-9 | 과수원 | 960 | 91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 |
| 3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4 | 산56-8 | 도로 | 36 | 4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 | | | | |

| | | | | | | | | | | | | | | |
|---|---|---|---|---|---|---|---|---|---|---|---|---|---|---|
| 3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7 | 738-10 | 대 | 320 | 12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 |
| 3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3 | | 답 | 78 | 78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 |
| 3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733-4 | 창고 용지 | 3,829 | 72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 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 |
| 3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733-5 | 창고 용지 | 3,829 | 6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 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 |
| 3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733-6 | 창고 용지 | 3,829 | 58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 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 |
| 4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1 | 833-5 | 답 | 4,465 | 114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 |
| 4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4 | | 창고 용지 | 57 | 57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 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 |
| 4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2 | 732-2 | 답 | 3,331 | 1113 | 하동군 | | | | | |
| 4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 | 750-3 | 잡종지 | 1,000 | 26 | 장*엽(1/2)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하동농업협 동조합 ㈜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 |
| 4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 | 750-3 | 잡종지 | 1,000 | 26 | 황*성(1/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 하동농업협 동조합 ㈜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 |
| 4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1 | 750-4 | 답 | 1,033 | 46 | 장*엽(1/2)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하동농업협 동조합 ㈜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 |
| 4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1 | 750-4 | 답 | 1,033 | 46 | 황*성(1/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 하동농업협 동조합 ㈜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 |
| 4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5-3 | 755-7 | 답 | 1,372 | 52 | 신*우 | | | | | |
| 4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6 | 756 | 답 | 397 | 397 | 최*인 | | | | | |
| 계 | | | | | | | 78,593 | 12,532 | | | | | | |

# 지 장 물 조 서

**사업명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 일련 연번 | 소재지 (하동군) | 지번 | 물건의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단위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하동읍 두곡리 | 733-3 | 소나무 | 묘목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2 | " | " | 감나무 | 묘목 | 3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3 | 하동읍 두곡리 | 833-5 | 감나무 | R20 | 8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4 | " | " | 비파나무 | R20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5 | 하동읍 두곡리 | 833-5 | 영산홍 | W0.5~1 | 2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6 | " | " | 영산홍 | W2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7 | " | " | 남천 | H1.5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8 | 하동읍 두곡리 | 732-2 | 창고 | 컨테이너 3*6 | 1 | 식 | **여*옥** | 하동읍 화심길 | |

| | | | | | | | | | |
|---|---|---|---|---|---|---|---|---|---|
| 9 | 하동읍<br>두곡리 | 732-2<br>733-4<br>733-5<br>733-6<br>833-4 | 바닥 | 아스콘포장<br>측구수로관및<br>스틸그레이팅<br>포함 | 275 | ㎡ | **여*옥** | 하동읍 화심길 | |
| 10 | 하동읍<br>두곡리 | 738-9<br>738-10<br>1631-3 | 음나무 | R15 | 3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1 | " | " | 자두나무 | R12 | 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2 | " | " | 감나무 | R10~12 | 1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3 | " | " | 사과나무 | R15~20 | 4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4 | " | " | 사과나무 | R8 | 2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5 | " | " | 대추나무 | R12 | 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6 | | | 매실나무 | R5 | 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7 | " | " | 사철울타리 | L:15<br>H:1.5 | 1 | 식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8 | " | " | 간판<br>(하동병원<br>장례식장) | 철제<br>(기초포함)<br>0.8*3 | 1 | 식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 | | | | | | | | |
|---|---|---|---|---|---|---|---|---|---|
| 19 | 하동읍<br>두곡리 | 736-2 | 창고<br>(2층) | 철근콘크리트조<br>슬라브지붕<br>19.5*10 | 195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0 | " | 736-2 | 주차장<br>(1층) | 철근콘크리트조<br>(피로티)<br>슬라브지붕<br>19.5*10 | **195**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1 | " | 736-2 | 창고<br>(1층) | 철근콘크리트조<br>슬라브지붕<br>19.5*(3+7.6)/2 | 103.35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2 | " | 736-2 | 출입문 | 철제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3 | " | 736-2 | 계단 | 콘크리트<br>0.8*7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4 | " | 736-2 | 바닥 | 콘크리트<br>5*20 | 100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5 | " | 736-2 | 이동식화장실 | FRP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6 | " | 736-2 | 물탱크 | 5톤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7 | " | 736-2 | 물품이설비 | CCTV 및 창고<br>내외부 건자재 등<br>동산류일체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8 | " | 736-2 | 음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9 | 하동읍<br>두곡리 | 736-5 | 대추나무 | R3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 | | | | | | | | |
|---|---|---|---|---|---|---|---|---|---|
| 30 | " | 736-5 | 음나무 | R15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1 | " | 736-5 | 매실나무 | R12 | 3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2 | 하동읍<br>두곡리 | 736-10 | 암반관정 | 6인치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3 | " | 736-10 | 지표수관정 | 소형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4 | " | 736-10 | 농업용전기 | -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5 | 하동읍<br>두곡리 | 736-11 | 창고 | 철골/강판<br>8*8 | 64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6 | 하동읍<br>두곡리 | 736-10<br>736-11<br>760-5 | 감나무 | R25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7 | " | 736-10<br>736-11<br>760-5 | 감나무 | R20 | 3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8 | " | 736-10<br>736-11<br>760-5 | 감나무 | R15 | 5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9 | " | 736-10<br>736-11<br>760-5 | 자두나무 | R3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 | | | | | | | | |
|---|---|---|---|---|---|---|---|---|---|
| 40 | " | 736-10<br>736-11<br>760-5 | 배나무 | R15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1 | " | 736-10<br>736-11<br>760-5 | 배나무 | R10 | 4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2 | " | 736-10<br>736-11<br>760-5 | 돌배나무 | R20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3 | " | 736-10<br>736-11<br>760-5 | 음나무 | R12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4 | " | 736-10<br>736-11<br>760-5 | 가죽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5 | " | 736-10<br>736-11<br>760-5 | 가죽나무 | R8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6 | " | 736-10<br>736-11<br>760-5 | 앵두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7 | " | 736-10<br>736-11<br>760-5 | 매실나무 | R25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8 | " | 736-10<br>736-11<br>760-5 | 매실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9 | " | 736-10<br>736-11<br>760-5 | 매실나무 | R15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50 | " | 736-10<br>736-11 | 배나무<br>(점적시설, | R20 | 27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 | | | | | | | | |
|---|---|---|---|---|---|---|---|---|---|
| | | 760-5 | Y자형철지주<br>포함) | | | | | | |
| 51 | " | 736-10<br>736-11<br>760-5 | 냉해방지기<br>(설비포함) | 철제H6 | 2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52 | 하동읍<br>두곡리 | 751 | 사무실 | 철골/스라브<br>21*9.5 | 199.5 | ㎡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3 | " | 751 | 화장실 | 철골/스라브<br>1.2*4 | 4.8 | ㎡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4 | " | 751 | 보일러실 | 판넬/판넬<br>1.5*1.2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5 | " | 751 | 계단 | 철제<br>1.2*5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6 | " | 751 | 바닥 | 콘크리트 | 810 | ㎡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7 | " | 751 | 상수도 |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8 | " | 751 | 수도시설 | 수도관PE 50mm<br>(80M)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9 | " | 751 | 난간대 | 철제<br>H1 | 70 | M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60 | " | 751 | 사철나무 | 20년생 | 2 | 주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 | | | | | | | | |
|---|---|---|---|---|---|---|---|---|---|
| 61 | 하동읍<br>두곡리 | 751 | 공장 | 철골/판넬<br>5*16.7+7.7*5 | 122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2 | " | 751 | 바닥 | 콘크리트<br>위에폭시 | 122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3 | " | 751 | 가추 | 철골/판넬<br>1*10 | 10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4 | " | 751 | 간판<br>(유진카정비) | 0.9*8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5 | " | 751 | 기계실 | 철골/판넬<br>2*3 | 6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6 | " | 751 | 셔터문 | 철제<br>4*4.5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7 | " | 751 | 조명 | 부착형 | 7 | 개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8 | " | 751 | 폐유탱크 | FRP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9 | " | 751 | 영업보상 | 유진카정비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0 | 하동읍<br>두곡리 | 751 | 영업보상 | 하동고속화물 | 1 | 식 | 김*수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1 | " | 751 | 가추 | 철골/강판<br>3*11 | 33 | ㎡ | 김*수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 | | | | | | | | |
|---|---|---|---|---|---|---|---|---|---|
| 72 | " | 751 | 물품이전비 등 | 동진개발장비 | 1 | 식 | 공*환 | 하동읍 중서1길10 중동빌라 | |
| 73 | " | 751 | 영업보상 | 유진ENC | 1 | 식 | 이*헌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4 | " | 751 | 간판<br>(유진ENC) | 0.9*8 | 1 | 식 | 이*헌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5 | 하동읍<br>두곡리 | 750-3<br>751 | 사무실 | 경량철골/판넬<br>11.4*5 | 57 | ㎡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76 | " | 750-3<br>751 | 영업보상 | 현대종합정비<br>검사소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77 | | 750-3<br>751 | 샤워실 및<br>휴게실 | 경량철골/판넬<br>6*3.3<br>(보수비포함) | 19.8 | ㎡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78 | | 750-3<br>751 | 관정 | D:150mm<br>장옥포함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편입여부<br>확인요함 |
| 79 | | 750-3<br>751 | 수도계량기 | 이설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0 | " | 750-3<br>752 | 감나무 | R20 | 1 | 주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1 | " | 750-3<br>753 | 편백나무 | R40 | 1 | 주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 | | | | | | | | |
|---|---|---|---|---|---|---|---|---|---|
| 82 | 하동읍<br>화심리 | 1693-3 | 간판#1<br>(현대종합정비검사소) | 철제(양면)<br>H7<br>6*0.8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3 | " | 1693-3 | 간판#2<br>(현대종합정비검사소) | 철제(양면)<br>H2,1.5*4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4 | " | 1693-3 | 간판#3<br>(현대종합자동차정비검사소) | 철제<br>H2,1.5*2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5 | 하동읍<br>두곡리 | 755-7<br>756 | 감나무 | R15 | 2 | 주 | 미상 | | |
| 86 | " | 755-7<br>756 | 매실나무 | R15 | 10 | 주 | 미상 | | |

#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요청서

<table>
<tr><td colspan="2">사 업 명</td><td colspan="3">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td></tr>
<tr><td rowspan="2">사 업<br>시행자</td><td>주 소</td><td colspan="3">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td></tr>
<tr><td>성 명</td><td colspan="3">하동군수</td></tr>
<tr><td rowspan="4">추 천<br>평 가<br>법 인<br>등</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명 칭</td><td row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FAX</td><td></td></tr>
<tr><td>대표자<br>성 명</td><td colspan="3"></td></tr>
</table>

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하동군수 귀하

# 이 의 신 청 서

| | | |
|---|---|---|
| 1. 제 목 |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br>보상계획에 따른 이의 신청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 이의신청 내 용 | | |
| 4. 기 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 .

이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 |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br>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하동군 공고 제2023-1071호

#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1일

##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 소하천명 | 사업 개요 | | | | | | | | | 비고 |
|---|---|---|---|---|---|---|---|---|---|---|
| | 공사명 | 공사 위치 | | 사업량(m) | | | 공사기간 | | 공사 목적 | |
| | | 시작하는 지점 | 끝나는 지점 | 축제 (築堤) | 호안 (護岸) | 기타 | 착공 | 준공 | | |
| 율동천, 고동골천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 | 하동읍 두곡리 772-3 | 하동읍 두곡리 756 | - | -식생블럭 설 치 L=196m -전석쌓기 L=221.5m | -고지배수로 L=754m -도로이설 L=260.0m -수문펌프 1식 -부대공 1식 등 | 2022.3 | 2023.12 |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 |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붙임조서 참조

나. 물 건 : 붙임조서 참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하며 물건조서의 경우 중앙 일간신문 공고 생략**

##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년 7월 21일 ~ 8월 5일

**※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보상금 지급 :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조치)

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보상금 산정→보상협의→소유권 이전후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055-880-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유지)

(사 유 지)

| 순번 | 시,군 | 읍,면,구 | 동,리 | 분필전 지번 | 분필후 지번 | 지목 | 전체 면적 ($m^2$) | 편입면적 ($m^2$) | 소 유 자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 내용 | |
| 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72-3 | 분필 예정 | 도로 | 135 | 75 | 장*선 | 하동군 읍내동 | | | | |
| 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8-1 | 분필 예정 | 임야 | 1,686 | 24 | 순흥안씨** 공파 광양**종중 | 전남 광양군 다압면 도사리 | | | | 종중 대표 안종열 |
| 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7 | 736-10 | 답 | 2,075 | 807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근저 당권 | |
| 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7 | 736-11 | 답 | 2,075 | 673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근저 당권 | |
| 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60-1 | 760-5 | 답 | 1,871 | 572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 근저 당권 | |
| 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5-1 | | 답 | 393 | 393 | 하동군 | | | | | |
| 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1 | 산56-5 | 임야 | 4,132 | 43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 | | |
| 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1 | 산56-6 | 임야 | 4,132 | 1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 | | |
| 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3 | 산56-7 | 도로 | 295 | 92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 | | | |
| 1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2 | | 창고 용지 | 549 | 549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국민 은행 |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진주종합금융센터) | 근저 당권 | |
| 1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5 | | 구거 | 327 | 327 | 경상남도 | | | | | |
| 1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6-3 | | 구거 | 512 | 512 | 하동군 | | | | | |
| 1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 | 757-7 | 잡종지 | 11,363 | 606 | 경상남도 | | | | | |
| 1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 | 757-8 | 잡종지 | 11,363 | 214 | 경상남도 | | | | | |
| 1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2 | 752-1 | 답 | 1,256 | 172 | 장*엽(1/2)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하동농업 협동조합 ㈜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 당권 ,지상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저당권 | |
| 1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2 | 752-1 | 답 | 1,256 | 172 | 황*성(1/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 하동농업협동조합㈜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 |
| 1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3 | | 답 | 929 | 929 | 하동군 | | | | | |
| 1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 | | 잡종지 | 998 | 998 | 남*철 | 하동군 하동읍 문도길 | 악양농업협동조합 |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88 | 근저당권,지상권 | |
| 1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7-1 | 분필예정 | 임야 | 542 | 41 | 하*농*개*조합 | 하동읍 읍내동 | | | | |
| 2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1-1 | | 답 | 13 | 13 | 윤*선(亡) | 하동읍 읍내동 | | | | |
| 2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11 | | 전 | 69 | 69 | 하동군 | | | | | |
| 2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2 | | 답 | 83 | 83 | 조*동(亡) | 하동읍 읍내동 | | | | |
| 23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1 | | 제방 | 145 | 145 | 김*윤 | 하동읍 두곡리 | | | | |
| 24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2 | 1-4 | 답 | 311 | 118 | 김*윤 | 하동읍 두곡리 | | | | |
| 25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1-3 | | 구거 | 595 | 595 | 김*윤 | 하동읍 두곡리 | | | | |
| 26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59-1 | 59-10 | 답 | 1,955 | 189 | 이*례 | 하동군 하동읍 중앙4길 | | | | |
| 27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4-3 | 204-4 | 제방 | 460 | 363 | 조*동(亡) | 하동읍 읍내동 | | | | |
| 28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3-2 | 203-4 | 전 | 383 | 243 | 하동군 | | | | | |
| 29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4 | 202-4 | 제방 | 194 | 84 | 하동군 | | | | | |
| 30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02-14 | 202-14 | 제방 | 297 | 195 | 하동군 | | | | | |
| 31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4 | | 하천 | 537 | 537 | 김*인(亡)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 | | |
| 32 | 하동군 | 하동읍 | 화심리 | 23-2 | | 하천 | 1,093 | 1093 | 김*인(亡)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 | | |

| | | | | | | | | | | | | | | |
|---|---|---|---|---|---|---|---|---|---|---|---|---|---|---|
| 3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 | 738-9 | 과수원 | 960 | 91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 |
| 3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산56-4 | 산56-8 | 도로 | 36 | 4 | 김*찬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 | | | | |
| 3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8-7 | 738-10 | 대 | 320 | 12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 |
| 3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3 | | 답 | 78 | 78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 |
| 3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733-4 | 창고용지 | 3,829 | 72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 |
| 3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733-5 | 창고용지 | 3,829 | 6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 |
| 39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3 | 733-6 | 창고용지 | 3,829 | 58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 |
| 40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1 | 833-5 | 답 | 4,465 | 114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 |
| 41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833-4 | | 창고용지 | 57 | 57 | 여*옥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금남농업협동조합 | 하동군 금남면 제먼당길 91(고남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 |
| 42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32 | 732-2 | 답 | 3,331 | 1113 | 하동군 | | | | | |
| 43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 | 750-3 | 잡종지 | 1,000 | 26 | 장*엽(1/2)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하동농업협동조합㈜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 |
| 44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 | 750-3 | 잡종지 | 1,000 | 26 | 황*성(1/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 하동농업협동조합㈜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 |
| 45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1 | 750-4 | 답 | 1,033 | 46 | 장*엽(1/2) | 하동군 하동읍 | 하동농업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 근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섬진강대로 | 협동조합 ㈜경남은행 |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당권,지상권 근저당권 | |
| 46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0-1 | 750-4 | 답 | 1,033 | 46 | 황*성(1/2) |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 하동농업 협동조합 ㈜경남은행 |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6(중앙지점)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642(석전동)(하동지점) |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 |
| 47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5-3 | 755-7 | 답 | 1,372 | 52 | 신*우 | | | | | |
| 48 | 하동군 | 하동읍 | 두곡리 | 756 | 756 | 답 | 397 | 397 | 최*인 | | | | | |
| 계 | | | | | | | 78,593 | 12,532 | | | | | | |

# 지 장 물 조 서

사업명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 일련 연번 | 소재지 (하동군) | 지번 | 물건의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단위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하동읍 두곡리 | 733-3 | 소나무 | 묘목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2 | " | " | 감나무 | 묘목 | 3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3 | 하동읍 두곡리 | 833-5 | 감나무 | R20 | 8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4 | " | " | 비파나무 | R20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5 | 하동읍 두곡리 | 833-5 | 영산홍 | W0.5~1 | 2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6 | " | " | 영산홍 | W2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7 | " | " | 남천 | H1.5 | 1 | 주 | 신*순 | 하동읍 마방길 | |
| 8 | 하동읍 두곡리 | 732-2 | 창고 | 컨테이너 3*6 | 1 | 식 | 여*옥 | 하동읍 화심길 | |

| | | | | | | | | | |
|---|---|---|---|---|---|---|---|---|---|
| 9 | 하동읍<br>두곡리 | 732-2<br>733-4<br>733-5<br>733-6<br>833-4 | 바닥 | 아스콘포장<br>측구수로관및<br>스틸그레이팅<br>포함 | 275 | ㎡ | 여*옥 | 하동읍 화심길 | |
| 10 | 하동읍<br>두곡리 | 738-9<br>738-10<br>1631-3 | 음나무 | R15 | 3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1 | " | " | 자두나무 | R12 | 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2 | " | " | 감나무 | R10~12 | 1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3 | " | " | 사과나무 | R15~20 | 4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4 | " | " | 사과나무 | R8 | 2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5 | " | " | 대추나무 | R12 | 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6 | | | 매실나무 | R5 | 1 | 주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7 | " | " | 사철울타리 | L:15<br>H:1.5 | 1 | 식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18 | " | " | 간판<br>(하동병원<br>장례식장) | 철제<br>(기초포함)<br>0.8*3 | 1 | 식 | 박*주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

| | | | | | | | | | |
|---|---|---|---|---|---|---|---|---|---|
| 19 | 하동읍<br>두곡리 | 736-2 | 창고<br>(2층) | 철근콘크리트조<br>슬라브지붕<br>19.5*10 | 195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0 | " | 736-2 | 주차장<br>(1층) | 철근콘크리트조<br>(피로티)<br>슬라브지붕<br>19.5*10 | 195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1 | " | 736-2 | 창고<br>(1층) | 철근콘크리트조<br>슬라브지붕<br>19.5*(3+7.6)/2 | 103.35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2 | " | 736-2 | 출입문 | 철제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3 | " | 736-2 | 계단 | 콘크리트<br>0.8*7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4 | " | 736-2 | 바닥 | 콘크리트<br>5*20 | 100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5 | " | 736-2 | 이동식화장실 | FRP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6 | " | 736-2 | 물탱크 | 5톤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7 | " | 736-2 | 물품이설비 | CCTV 및 창고 내외부 건자재 등<br>동산류일체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8 | " | 736-2 | 음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29 | 하동읍<br>두곡리 | 736-5 | 대추나무 | R3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 | | | | | | | | |
|---|---|---|---|---|---|---|---|---|---|
| 30 | " | 736-5 | 음나무 | R15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1 | " | 736-5 | 매실나무 | R12 | 3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2 | 하동읍<br>두곡리 | 736-10 | 암반관정 | 6인치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3 | " | 736-10 | 지표수관정 | 소형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4 | " | 736-10 | 농업용전기 | - | 1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5 | 하동읍<br>두곡리 | 736-11 | 창고 | 철골/강판<br>8*8 | 64 | ㎡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6 | 하동읍<br>두곡리 | 736-10<br>736-11<br>760-5 | 감나무 | R25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7 | " | 736-10<br>736-11<br>760-5 | 감나무 | R20 | 3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8 | " | 736-10<br>736-11<br>760-5 | 감나무 | R15 | 5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39 | " | 736-10<br>736-11<br>760-5 | 자두나무 | R3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 | | | | | | | | |
|---|---|---|---|---|---|---|---|---|---|
| 40 | " | 736-10<br>736-11<br>760-5 | 배나무 | R15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1 | " | 736-10<br>736-11<br>760-5 | 배나무 | R10 | 4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2 | " | 736-10<br>736-11<br>760-5 | 돌배나무 | R20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3 | " | 736-10<br>736-11<br>760-5 | 음나무 | R12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4 | " | 736-10<br>736-11<br>760-5 | 가죽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5 | " | 736-10<br>736-11<br>760-5 | 가죽나무 | R8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6 | " | 736-10<br>736-11<br>760-5 | 앵두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7 | " | 736-10<br>736-11<br>760-5 | 매실나무 | R25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8 | " | 736-10<br>736-11<br>760-5 | 매실나무 | R20 | 1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49 | " | 736-10<br>736-11<br>760-5 | 매실나무 | R15 | 2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50 | " | 736-10<br>736-11 | 배나무<br>(점적시설, | R20 | 27 | 주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 | | | | | | | | |
|---|---|---|---|---|---|---|---|---|---|
| | | 760-5 | Y자형철지주<br>포함) | | | | | | |
| 51 | " | 736-10<br>736-11<br>760-5 | 냉해방지기<br>(설비포함) | 철제H6 | 2 | 식 | 하*철 | 진주시 일반성면 수목원로 | |
| 52 | 하동읍<br>두곡리 | 751 | 사무실 | 철골/스라브<br>21*9.5 | 199.5 | ㎡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3 | " | 751 | 화장실 | 철골/스라브<br>1.2*4 | 4.8 | ㎡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4 | " | 751 | 보일러실 | 판넬/판넬<br>1.5*1.2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5 | " | 751 | 계단 | 철제<br>1.2*5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6 | " | 751 | 바닥 | 콘크리트 | 810 | ㎡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7 | " | 751 | 상수도 |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8 | " | 751 | 수도시설 | 수도관PE 50mm<br>(80M) | 1 | 식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59 | " | 751 | 난간대 | 철제<br>H1 | 70 | M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60 | " | 751 | 사철나무 | 20년생 | 2 | 주 | 남*철 | 하동읍 시장1길 | |

| | | | | | | | | | |
|---|---|---|---|---|---|---|---|---|---|
| 61 | 하동읍<br>두곡리 | 751 | 공장 | 철골/판넬<br>5*16.7+7.7*5 | 122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2 | " | 751 | 바닥 | 콘크리트<br>위에폭시 | 122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3 | " | 751 | 가추 | 철골/판넬<br>1*10 | 10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4 | " | 751 | 간판<br>(유진카정비) | 0.9*8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5 | " | 751 | 기계실 | 철골/판넬<br>2*3 | 6 | ㎡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6 | " | 751 | 셔터문 | 철제<br>4*4.5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7 | " | 751 | 조명 | 부착형 | 7 | 개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8 | " | 751 | 폐유탱크 | FRP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69 | " | 751 | 영업보상 | 유진카정비 | 1 | 식 | 이*철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0 | 하동읍<br>두곡리 | 751 | 영업보상 | 하동고속화물 | 1 | 식 | 김*수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1 | " | 751 | 가추 | 철골/강판<br>3*11 | 33 | ㎡ | 김*수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 | | | | | | | | |
|---|---|---|---|---|---|---|---|---|---|
| 72 | " | 751 | 물품이전비 등 | 동진개발장비 | 1 | 식 | 공*환 | 하동읍 중서1길10 중동빌라 | |
| 73 | " | 751 | 영업보상 | 유진ENC | 1 | 식 | 이*헌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4 | " | 751 | 간판<br>(유진ENC) | 0.9*8 | 1 | 식 | 이*헌 |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
| 75 | 하동읍<br>두곡리 | 750-3<br>751 | 사무실 | 경량철골/판넬<br>11.4*5 | 57 | ㎡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76 | " | 750-3<br>751 | 영업보상 | 현대종합정비<br>검사소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77 | | 750-3<br>751 | 샤워실 및<br>휴게실 | 경량철골/판넬<br>6*3.3<br>(보수비포함) | 19.8 | ㎡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78 | | 750-3<br>751 | 관정 | D:150mm<br>장옥포함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편입여부<br>확인요함 |
| 79 | | 750-3<br>751 | 수도계량기 | 이설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0 | " | 750-3<br>752 | 감나무 | R20 | 1 | 주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1 | " | 750-3<br>753 | 편백나무 | R40 | 1 | 주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 | | | | | | | | |
|---|---|---|---|---|---|---|---|---|---|
| 82 | 하동읍<br>화심리 | 1693-3 | 간판#1<br>(현대종합정비검사소) | 철제(양면)<br>H7<br>6*0.8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3 | " | 1693-3 | 간판#2<br>(현대종합정비검사소) | 철제(양면)<br>H2,1.5*4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4 | " | 1693-3 | 간판#3<br>(현대종합자동차정비검사소) | 철제<br>H2,1.5*2 | 1 | 식 | 장*엽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
| 85 | 하동읍<br>두곡리 | 755-7<br>756 | 감나무 | R15 | 2 | 주 | 미상 | | |
| 86 | " | 755-7<br>756 | 매실나무 | R15 | 10 | 주 | 미상 | | |

#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요청서

<table>
<tr><td colspan="2">사 업 명</td><td colspan="3">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td></tr>
<tr><td rowspan="2">사 업<br>시행자</td><td>주 소</td><td colspan="3">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td></tr>
<tr><td>성 명</td><td colspan="3">하동군수</td></tr>
<tr><td rowspan="4">추 천<br>평 가<br>법 인<br>등</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명 칭</td><td row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FAX</td><td></td></tr>
<tr><td>대표자<br>성 명</td><td colspan="3"></td></tr>
</table>

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하동군수 귀하

# 이 의 신 청 서

| | | |
|---|---|---|
| 1. 제 목 | | 두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br>보상계획에 따른 이의 신청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 이의신청 내 용 | | |
| 4. 기 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 .

이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하동군수 귀하**

| | |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br>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